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바른신앙시리즈 9**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펴낸이	김종희
저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뉴스앤조이〉취재팀
책임편집	황명열
펴낸곳	도서출판 〈뉴스앤조이〉 www.newsnjoy.or.kr
등록	2000년 12월 18일 제20-205호
초판인쇄	2015년 1월 7일
초판발행	2015년 1월 7일
주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52 명신프라자 6층
전화	02-744-4116
e-mail	newsnjoy@newsnjoy.or.kr
값	8,000원
ISBN	978-89-90928-35-8 03230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 머리글

### 청지기로서 책임감 회복이 시급한 과제

서점에 꽂혀 있는 재정 관리 책자들을 보면 기업의 투자 관리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교회나 기독인의 재정 관리에 관한 책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만 놓고 단순 비교해도 영리 조직의 재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리 조직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많은 이익이 반대급부로 따라오지만, 교회 재정 관리는 그 성격상 재물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도록 소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금전적 수익이 반대급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신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위험한 존재로 경고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재물의 본질에 대해 ‘믿음으로…’, ‘좋은 것이 좋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로 대충 신뢰하고 넘어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회 내에서 재정에 대해 얘기하면 믿음 없는 인본주의 신앙인 취급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입’도 막은 채 지

내는 게 한국교회의 솔직한 현실이다.

성도들이 교회 재정에 대한 논의를 ‘믿음’이라는 단어 뒤로 숨겨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청지기적 사명을 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나라를 대적하는 행동이다. 그러기에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재정 관리를 위한 복잡한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교회 구성원들이 청지기적 주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교회 재정 사고는 특정인에게 재정 관리가 일임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관리 책임을 잊어버릴 때 쉽게 발생 한다.

이 책은 기술적인 안내서가 아니라, 10여 년 동안 교회 재정 관리 분야에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한 묵상과 상담 사례를 통하여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단상들을 모은 것이다. 이번이 완결판이 아니라 총론이나 서론 정도에 불과한 내용만을 다루었기에,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통로로 파고들어오는 맘몬의 전략들을 적확하게 분별하여,

## 추천사 1

재정 관리에 꼭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를 통해 교회들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하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최호윤 회계사

(제일회계법인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은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돈에 놀리고 압제 당하고 있는 것은, 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좋은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건강한 재정 관리의 지혜를 배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모든 성도님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 박은조

(은혜샘물교회 목사)

## 추천사 2

“오늘날 세계와 우리 사회는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의 심화로 심각한 갈등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의 핵심에는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중 신앙인들에게도 경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준 것은 교회보다는 칼 마르크스와 아담 스미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신앙인들이 기독교를 받아 들였던 주요한 동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물리쳐 보겠다는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물산장려운동이나 금주, 절제 운동을 통한 국채보상운동 등을 실천한 바 있으며, 오늘날에는 경건과 절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신앙적인 경제생활을 충분히 가르쳐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잘 살아보세!’라는 개발 이데올로기를 ‘믿음 안

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뒷받침하여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경제 윤리적 가르침은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위기는 바로 ‘어떻게’를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스러운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을 출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지식과 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그들에게 주신 ‘전문성’과 ‘사회와 교회 섬김의 경험’을 제물로 드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재정 영역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힘쓰던 이들이, 구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모처럼 소망이 절망을 이겨내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자리에 중인 됨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기윤실 공동 대표)

### 추천사 3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내·외부로부터 지적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적을 받아 온 것이 바로 교회 재정 관리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회단체들도 재정 관리에 대하여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들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아야 할 교회 재정 관리가 교회의 내·외부로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국교회 재정 관리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시하는 노력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력의 대가로 발간되는 이 책의 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자가 한국교회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

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람직한 재정 관리의 실제와 모범적인 재정 관리 규정을 이 책자에 포함하고 있어, 회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재정 관리 담당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일반화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최현돌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머리글	… 04
추천사	… 07

**CHAPTER 01****투명한 교회 재정, 교회 회복을 위한 지름길**

1-1. 하나님과 맘몬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 16
1-2. 재정 관리는 작은 교회에 더 필요하다	… 21
1-3. 회계는 다른 형태의 언어다	… 27
1-4.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바른 원칙은 무엇인가	… 32
01 교회 재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33
02 투명한 교회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 관리 절차	… 37

**CHAPTER 02****바람직한 교회 재정 관리의 실제**

2-1. 예산 계획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필수 사항이다	… 48
2-2. 집행·기록 내가 사용한 재정은 문제가 없다고?	… 52
2-3. 집행·기록 복식부기를 사용하라	… 57
01 단식부기의 한계성과 취약성	… 57
2-4. 결산 구분과 표현이 다르다고 세상이 변할까?	… 63
01 사례로 본 교회 결산서의 문제	… 64

**2-5. 결산 손에 잡히는 결산 정보** … 70

01 비율의 의사소통	… 70
02 예산과 결산의 의미	… 71
03 예·결산서 작성 기준	… 72
04 예·결산 보고서의 효율적인 검토 방법	… 73
05 예·결산 공동의회에서의 바람직한 정보 파악 및 공유	… 76

**2-6. 감사 監查만 할 것인가, 感謝도 할 것인가?** … 78**2-7. 공시 왜 교회 재정을 공개해야 하나?** … 82

01 교회 재정 관리의 역학 관계	… 83
02 교회 재정 관리의 공공성	… 84
03 교회 재정 관리의 투명성	… 85
04 교회 재정 공개의 질(質)과 양(量)	… 86
05 교회 재정 공개의 걸림돌	… 87

**2-8. 공시 교회의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 92**CHAPTER 03****모범적인 교회 재정 관리 규정**

3-1. 바람직한 교회 재정 관리의 흐름	… 96
3-2. 모범적인 교회 재정 관리 규정	… 97

01 정관(또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사항	… 98
02 정관(또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규칙	… 113

## CHAPTER 04

### 교회 재정 운영 사례

- 4-1. 사례 1 부천 예인교회 … 138
- 4-2. 사례 2 향상교회 … 149
- 4-3. 사례 3 새길교회 … 161
- 4-4. 사례 4 새맘교회 … 172
- 4-5. 사례 5 나눔과섬김교회 … 184

부록 A. 종교인 과세 여부의 판단 근거 … 195

부록 B.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활동 연혁 및 단체 소개 … 209



1

투명한 교회 재정,  
교회 회복을 위한 지름길

## 하나님과 맘몬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드린 현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관리하고 사용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교회가 재정 관리에 있어서 청지기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물질(현금)로 인해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개인 구분할 것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실정이다.

교회가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좋은 것이 좋다’는 관점이 아니라, 각자가 냉철한 지혜로 무의식중에 파고든 물질주의 문화의 공격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분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관리’라는 단어를 접할 때 대부분의 교인이 가지는 선입견은 ‘우리는 비전문가다’, ‘재정 관리를 잘 모른다’, ‘어

렵다’, ‘숫자 정리는 어차피 틀리기 일쑤다’ 등이다. 한마디로 재정 관리가 쉽지 않으니 가능한 한 쉽고 간편한 방식이 좋다는 생각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니 웬만큼 틀려도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식이다. 그래서 교회 재정 관리는 경험 없는 비전문가일지라도 믿음이 좋다면 맡기게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몰라도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슷하게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본인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 정도라도 “수고 했다”고 칭찬하고 넘어간다. 마치 본인들이 맡겨진 재정의 주인이 되어 선심을 쓰는 것 같이, 개의치 않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다.

재정 관리가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대강대강해도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 입장이 아니라 재정 관리를 맡기는 주인(Lord)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 직원에게 5000만 원을 맡기면서 알아서 투자와 관리를 해달라고 의뢰했는데, 관리 부탁을 받은 직원이 투자 의사 결정을 잘못하여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는 ‘증권회사 직원이 아직 신입이라서’, ‘아직까지 그 일을 하기에 서툴러서’ 등의 이유로 그 정도의 손실을 괜찮다고 할까?

투자자는 “왜 무능한 직원을 창구에 배치했느냐”, “직원 훈련을 그렇게 밖에 못 시키냐”라고 하면서 재정 관리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본인의 손실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즉, 관리의 대상이 내 돈이라면 우리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수익을 기대하며,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다. 그 수준이 계속 충족되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증권회사로 바꾸어 버린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한 후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시켜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그러므로 ‘회사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등 경영자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사는 재정 운영 과정을 정리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한다. 교회 재정 담당자들이 어렵다고 무서워하는 ‘복식부기 회계 처리’ 방법으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업무를 맡긴다. 그리고 정확한 ‘복식부기 회계 처리’를 모르면 재정 관리 담당자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배워서라도 처리한다. 또한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회계학’, ‘재무관리’, ‘투자론’, ‘재정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고민하고 연구한다.

만약, 기업에서 복식부기가 어려워 재정을 관리하기 힘드니 쉬운 단식부기 방법으로 ‘수지 결산서’만 만들자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된다. 맡긴 돈을 잘 관리하고 보고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돈이 투자 관리의 대상이거나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려워서 못한다”, “몰라서 못한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쉽게 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돈이 되고 수익이 되고 생활이 되는 분야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자본주의 현상이다. 그래서 주주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자세는 어떤가. 교회는 (무급 봉사직이니) 비전문가들이니까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쉽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재정 관리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재정 관리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재정 관리 방법이 어렵다면 이를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나 하는가. 교회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해야

## 재정 관리는 작은 교회에 더 필요하다

할 질문이 너무 많다.

오늘날, 하나님이 맡긴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는 사람이 맡긴 재정을 관리하는 일반 기업보다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가 자신 있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재정의 청지기로서 시급히 회개해야 할 사안이다. 교회가 재정 관리 분야를 계속 소홀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주(主)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맘몬을 주(Lord)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맘몬 중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그 선택을 요구하신다.

교회 재정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재정 관리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이든 한 달란트이든 상관없이 충성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모두가 지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발상이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재정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재정 개선의 가능성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일례로 월급이 1000만 원인 가장과 생활비를 겨우 충족하는 선인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가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사람 중 생활비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규모 있게 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월급이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수입으로 인해 잉여 자금

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계획이나 고민 없이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유 활동을 누릴 수 있다(그렇다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만 생활비를 겨우 충족하는 수입을 가진 가장의 경우에는 잉여 자금 부족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자기 계발에 투자하거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의 관리 책임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 몸을 관리할 책임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재정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교회가 재정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❶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현금을 교회 구성원의 손을 통하여 사용하신다. 이제는 현금을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드려진 현금이 하나님나라 확장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이 제사장에 의해 임의로 처분되었고, 따라서 봉헌자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만

족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제가 없어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현금이 목회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현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선한 청지기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❷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할 일은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재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재정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므로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게 된다. 즉, 재정을 사용한 결과는 교회가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 방향에 따라 필요한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한다.

❸ 지역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교회가 계속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지역사회에 짐이 되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에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살전 4:12)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❹ 교회 스스로가 교회에 맡겨진 재정을 관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야만 성도들 개인 재정 생활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교회가 건강한 재정 운용에 대한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를 보일 때, 이를 보고 성도들도 맘몬의 영향을 받는 자본주의에서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배울 수 있다.

⑤ 재정 운용에 대한 결산과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란 점이다. 이는 재정 운용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할 때 각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교회가 더욱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① 사용할 재원이 없어서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한다. 재정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에 먼저 재정을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② 재정수입이 넘치는 경우는 여유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균형 있게 고민해서 지출하기보다 남용하기 쉽다. 재정수입이 넘치는 대형 교회가 교회 건축이나 내부 비용 지출에 집중하면서 받게 되는 사회적 지탄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③ 교회 재정이 특정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사용되기 쉽다. 재정 관리에 특정인만 참여하게 되면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마치 교회의 판단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특정인의 생각에 따라 재정을 사용한다.

④ 재정 관리에 대한 고민이 없을 경우 부지불식간에 영리 기업의 경영 논리 또는 자본주의 논리에 종속되어 버린다. 많은 교회가 교회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서 차입금을 활용한다. 이는 기업이 투입 자본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렛대 (leverage)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회가 모방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교회 재산도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차입을 보증한 많은 성도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路 13:8)는 말씀을 교회가 고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 논리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⑤ 불미스러운 경리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회의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재정 관리의 원칙을 설정하지 않은 채 재정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되는 결과가 된다.

교회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세간에서는 오

## 회계는 다른 형태의 언어다

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의 분쟁들이 주로 재정 문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는 말씀은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 경고는 기독교인이라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투명한 교회 재정 관리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나는 출발점이 된다.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나야 한다.

교회 결산서를 접할 때마다 당황스럽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교회마다 사용하는 결산서의 종류는 단순한 반면에 계정과목 체계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수지 결산서 한 가지만으로는 입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교회마다 일관되지 않게 사용하는 계정과목 체계로는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도 없다.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도 이해하기 힘든 재정 관련 보고서를 과연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 보고서는 1년(회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숫자 형태로 요약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요약의 결과물인 재정 보고서를 보면 1년 동안 있었던 일의 내용을 역으로 추론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마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번역한 한글 문서를 읽고 외국어로 작성된 원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하려면 외국어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가 일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즉, 외국어와 한글 간의 문장구조 차 이를 연결하는 일정한 원칙(문법과 해석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영어로 “Good morning!”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거나 번역하는 원칙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외국어로 표현한 내용을 번역하는 사람 각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되므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단절될 것이다.

현재의 한국교회가 표현하는 재정 보고서는 마치 각국의 방언으로 각자가 표현하는 것과 같은 상태다. 재정 보고서만 봐서는 재정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타인들이 재정 사용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는 것이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인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정 보고서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회계’라는 언어의 사용 원칙을 무시하고 개 교회가 각자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보고서 작성 목적을 무시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개 교회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재정조례(또는 재정 원칙)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런 재정조례를 무시한 채 재정 관

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❶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의 계정과목 체계는 정부 회계 계정과목 체계를 차용해서 사용하다보니 너무 복잡하다. 정부 회계의 계정과목 체계는 ‘부서별 → 기능별 → 속성별’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입 예산서, 세출 예산서는 책 한 권 분량이 되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훑어 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계정과목 체계를 교회에 그대로 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서별 계정과목 체계는 ‘재정부’, ‘교육부’, ‘선교부’ 등 교회의 조직 부서별로 먼저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목양’, ‘선교’, ‘구제’, ‘장학’ 등 기능별 체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인건비’, ‘통신비’, ‘인쇄비’ 등과 같은 속성별 체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서별 → 기능별 → 속성별 계정과목 체계를 잘 사용하려면 상하위 체계의 혼동이 없어야 하며, 최하위인 속성별 계정과목까지 모두 표시해야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부서별 분류 체계인 ‘선교부’와 기능별 분류 체계인 ‘예배비’, 그리고 속성별 분

(1) 참고로 재정조례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재정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재정조례에는 재정 관리의 원칙, 운용 절차, 보고서 및 표준 계정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보고서 및 표준 계정과목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류 체계인 ‘사례비’를 같은 차원의 분류 값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의 재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행사비’ 또는 ‘수련회 행사비’ 같은 기능별 분류 체계를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사비의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요약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상위개념 체계를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하위 분류 체계는 지켜야 한다.

② 계정과목의 개념에 상식과 통일성이 없다. 예를 들어 특정인 또는 특정인 자녀의 등록금을 보조하는 금액을 ‘장학금’이라고 표시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 이에 일치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학비를 장학금이라고 표현하며, 부교역자 또는 교육전도사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등록금은 교회에서의 사역을 전제하므로 사례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사례비를 장학금으로 표시하면 재정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은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양 사실과 다른 정보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다.

통일성과 관련해서 교회학교 담당 교육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역시 어떤 교회는 ‘사례비’로 표현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비’로 표현하고, 어떤 교회는 ‘장학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주일 식당 운영비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도 예배 후의 식사를 떠올 떼는 교제로 보는 교회는 ‘예배비’로 표현하고, 식사를 통하여 불신자를 전도한다고 생

각하는 교회는 ‘전도비’로 표현하고, 교인들의 복리를 지원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후생비’로 표현한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을 각각 다른 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 결산서를 보는 사람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재정 보고서는 작성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재정 운영 결과를 요약하여 알리는 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즉, ‘회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사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작성자나 보는 사람이 오해 없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켜야 할 언어 사용 원칙을 서로가 약속하고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재정조례를 정하는 의의가 있다.

##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바른 원칙은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여 함이라”(고후 8:21)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나”(눅 12:42)

언젠가부터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이 신뢰의 상징에서 불신과 지탄의 이미지로 변질되었다. 또한 교회 내부 재정 문제로 인하여 교인들이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는 소식이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될 현금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은,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교

회의 재정 관리 방향과 과정에 성경적 원칙이 도입되지 않았고, 교회가 책임 맡은 청지기로서 진실하고 지혜롭게 관리할 책임(눅 12:42 참조)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파악하여, 오류와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한 처리 절차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 01 교회 재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교회 재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의 원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 영성에 의존

오류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기보다는 개인의 영성(믿음)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재정을 관리해서는 사전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말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담당자를 믿음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를 넘어지게 할 잠재적인 유혹의 한 가운데 던져놓는 것이다.

#### 담당자의 준비 부족 및 교육 부재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이 없는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자가 재정 처리를 잘 하려면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정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재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전문가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재정 관리프로그램)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미흡한 상태다.

#### 합력과 용서에 대한 오해

교회 내에는 은혜롭게, 덕스럽게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교회의 재정 관리 또한 당연히 그렇게 덮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좋지 못한 관행이 있다. 잘못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잘못을 방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별개 사안으로 구별해야 한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적당히 덮어버리는 것은 관리자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잘못을 방지 할 책임을 무시한 직무 유기다.

#### 재정 처리 과정에 대한 교인들의 무관심

재정 관리의 주체는 교회이며,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므로,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 각자가 재정 관리의 주체로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재정 관리는 재정부와 재정 담당자만의 책임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교회 구성원이기를 포기한다. 그러는 순간 제3자적 입장에서의 관람자로 전락하고 만다.

#### 구체적 관리 지침의 부재

개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 차원에서도 재정 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 관리 지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담당자나 특정한 개인의 생각과 주장으로 재정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수지 결산서의 한계

교회가 작성하는 결산서는 대부분 수지 결산서에 국한된다. 그런데 자금(현금+요구불예금)의 증감 내역만 관리하는 수지 결산서로는 특정한 기간에 발생한 교회의 자금 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며, 재산과 부채 현황 및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형식적인 감사

감사는 숫자로 표현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1년간 ‘재정 관

리가 성경적 원리로 운영되었는지’, ‘재정 사용이 기도하며 준비한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재정 관리와 감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감사인이 실시하는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 정보의 폐쇄성

재정 관리 정보가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에게만 공개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재정 관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수동적 방관자가 되어 버린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제3자 입장에서 재정 집행 결과를 통한 교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정보의 폐쇄성과 집중성은 그 정보를 독점하는 자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다.

### 구체적인 대안 제시의 부재

교회 재정 관리의 포괄적 개념 원칙 또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으로는 재정 관리가 개선될 수 없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실천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고 교회의 재정 처리가 바르게 진행되려면 ‘재정 관리 원칙 정립’, ‘재정 관리 과정의 매뉴얼화’, ‘재정 관리 교육’ 등과 같은 운용적인 측면과 비전문가도 손쉽게 이용하여 결산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정 관리프로그램 준비’라는 도구적인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처럼 교회 재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9가지로 살펴보았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도입할 수 있는 재정 관리 절차(system)를 알아보자.

## 02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 관리 절차

교회의 재정 관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 관리 운용 절차가 도입된다면 투명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재정 관리 지침 설정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려면 재정을 사용하는 용도(어디에)와 절차적인 과정(어떻게)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지침으로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침에는 성경적 원리의 선언적 측면과 원리가 구체적 절차로 표현되는 측면 모두를 규정으로 정리해야 한다. 지침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원리적 측면에서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표현되어야 한다.

**① 교회의 공동체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므로 교회가 행하는 관리 활동과 의사 결정이라는 주체적 책임은 특정인이 아니라 구성원의 집합체인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구성원 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② 청지기 관점에서의 관리** 담임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③ 지혜로운 관리** 청지기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할 책임도 같이 부여받는다. 따라서 재정 관리 담당자는 지혜로운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고민할 것을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세상을 품는 교회** 교회의 재정(부동산과 같은 재산 포함)은 교회 내부 교인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은 내부 성도들만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확장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재정을 집행한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교회 시설을 사회에 공개하여 불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 관리 내용을 포괄하여 정하는 재정 지침과는

별도로 특정 목적별 관리 항목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즉, 구제비 지원 규정, 선교비 지원 규정, 장학 기금 운영 규정, 건축 현금 관리 규정 등 교회가 집행하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항목별로 집행 대상, 집행 시기, 집행 규모, 여유 자금 운용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 결정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로 구성되었으므로 의사 결정 또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며, 구성원 각자가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결정된 지침은 재정을 집행할 때에는 사용 기준이 되고, 재정의 집행 결과를 감사(監査)할 때에는 판단 기준이 된다.

### 기능의 분리

사용을 결정하는 기능(승인), 집행하는 기능(집행), 집행 결과를 기록하는 기능(기록)이 동일인에게 집중될 때 오류 또는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 재정 집행자
- 기록하는 사람(회계장부 작성자)
- 감독·승인하는 자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최소한 집행 기능과 기록 기능은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전담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면 두 명 이상의 재정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래서 현금을 같이 계수한 후 한 명은 현금과 예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이를 기록하도록 재정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산 수립과 승인 절차

목회 계획에 따라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재정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현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 과부족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이 된다.

예산을 수립(또는 승인)할 때 특정인 또는 특정 부서가 많은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행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등 서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특정인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결정하면 안 된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나라와 교회의 비전에 비추어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산 조정 절차는 교회의 방향에 대한 의견 조정과 통합 과정이 되며, 구성원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견고히 세워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중요하다.

또한 설정한 예산이 교회의 비전 및 목회 방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참여하여 예산을 승인함으로 승인 절차가 공동체 차원에서 협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문서화

재정이 사용된 모든 과정과 내역들은 증빙이 첨부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문서로 남기는 것은 사후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집행 내역을 열람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식부기의 도입

대부분의 교회는 현금 기준을 근거로 한 수지 결산서 중심의 단식부기로 결산서를 작성한다. 이 결산서는 현금주의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금의 입출이 없는 현물로 현금을 하거나, 교회가 부담하는 부채라 할지라도 현금의 지출이 없으면 결산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과 예금의 증가 또는 감소 결과만 관리하는 단식부기로는 재정 관리에

한계가 있음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두 가지 이상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관리하므로, 재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회의 재산과 부채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단식부기에 비해 어렵고 기초 개념을 배워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 목적 적합한 계정과목 체계

결산은 ‘드려진 현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행한 사역을 숫자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교회의 재산(부채 포함)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교회가 할 일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개 교회마다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에 따라 재정을 잘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목적을 정한 현금 또는 적립금은 미리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계정과목 체계도 있어야 한다.

### 실질적 감사 기능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현금 사용 과정에 대하여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재정 관리자를 별도로 세워서 재정 관리의 역할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 관리자가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감사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는 반드시 재정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대형 교회의 경우 외부감사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는 중소형 교회의 경우에는 교단 내 교회별로 교차 감사를 하는 방식 등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 주기적인 검토

감사는 사후에 오류를 파악하여 지적하는 기능도 있지만 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교정하는 기능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회계 기간이 종료한 후 회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뿐만 아니라, 분기별로도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사항을 미리미리 수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 공시 절차

재정이 사용된 결과(결산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회 내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교회는 사역한 결과들을 책자 또는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산서는 1년간 하나님께 인도하심으로 사역한 과정과 결과들을 숫자라는 언어의 형태로 표현한 서류이므로, 결산서는 교회 내부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불신자들에게도 공개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알려야 한다. 즉, 결산서를 공개해서 내부 자체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도구로도 사용해야 한다.

### 실무자 교육 기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기타 제직들에 대해서는 선발에서부터 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매주 연습 또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충실히 준비한다. 그렇지만 이와 비교해서 재정 관리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재정 담당자로 세우거나, 세운 후에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교회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청지기는 ‘열심히’라는 충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를 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관리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배우는 과정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정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을 개설하여 개 교회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실무자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 비전문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관리프로그램

모든 교회가 내부에서 재정 관리 전문가를 발굴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좀더 손쉽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절차 중 교회가 적용하는 항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롭고 투명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다음의 항목만이라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교회 재정 관리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재정 관리 지침의 설정
- 문서화
- 공시 절차

2

바람직한 교회 재정  
관리의 실제

예산 계획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필수사항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네 삶은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은 바보짓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베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회복의 측면에서 ‘구원’은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렇지만 회복된 자녀가 되고나서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셨고,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도 청지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간혹 교회 재정 관리에서 예산 설정을 얘기할 때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마 6:34 참조)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반박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위 구절은 생존 차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과업이 맡겨진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할지 고민하고 관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맡은 자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고전 4:2 참조)이라는 말씀과 달란트 비유에서 청지기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충성과 ‘주인의 신뢰도를 저버리지 않고 주인을 속이지 않는다’는 착함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외에도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요구한다.(눅12:42 참조) 즉, 청지기는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오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으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며, 그 고민 중 하나가 예산을 설정하고, 계획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결과를 계획과 비교·분석하여 실수와 잘못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산을 세우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혜로운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유익하다.

#### ① 예산 결정은 교회가 한정된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즉,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예산이 없으면 재정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누군가 급하다고 요구하거나, 특정인의 결정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재정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예산을 미리 설정하면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예산 제도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서 교회가 설정한 중요도에 따라서 재정을 사용하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 ② 예산을 세우면 규모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재정 계획이 없으면 눈 앞에 닥치는 시급한 사항들을 처리하느라 교회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 특별히 교회가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거나,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 하려면 반드시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시로 교인들에게 특별 현금을 요청하게 되고, 이는 계획을 세워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 ③ 교회가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려면, 반드시 다음 해에 교회

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교인들이 같이 고민해야만 한다.

교회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

다. 즉, 교회의 의사 결정이 특정한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같이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 ④ 예산이 설정되고 공동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예산에 녹아 들어 있는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비전과 방향성이 된다.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단순히 다수가 결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교인들은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하여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⑤ 교회가 예산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재정을 총성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과정을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개인 차원에서의 재정 관리의 방법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 내가 사용한 재정은 문제가 없다고?

일반인을 포함한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금의 규모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내역을 기록·정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내역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사용하였고, 본인 이외에는 사용한 호주머니 돈에 대한 이해 관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업무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정리하여 증빙(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과 같이 제출하여 정산한다. 시내 교통비(버스, 지하철) 같이 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구간·방문 목적·방문자 등을 기록한 내부 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왜냐하면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경비는 개인의 돈이 아니라 기업(출자자)의 돈이므로, 기업의 돈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 사용 내역을 일을

맡긴 기업에게 상세하게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업의 주인인 오너(owner)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증빙 처리를 해야만 한다. 오너가 증빙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업의 경비가 아니라 오너 개인 차원의 지출이기 때문이다.

교회 결산서를 볼 때마다 목회 활동비, 목회 도서비, 심방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왜 증빙 처리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바쁜 목사님에게 영수증 챙기는 노력을 덜어드리고, 또 목사님이 알아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대답을 듣는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와 제직회(당회 포함)가 협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 증빙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정액 처리를 선호하는 것은 정액 처리가 관리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지급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기 쉽고,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받을 때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받은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알아서 사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마치 지금은 없어진 기업의 판공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금을 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드려진 현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회 재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담임 목회자인가? 아니다. 그 책임은 공동체 전체에게 있다. 성도들이 드린 현금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용하신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특정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책임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드려진 현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사용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조금 불편할지라도 실비로 정산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경비를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을 교회에 반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남은 잔액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한다. 마치 개인의 소득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받을 때에는 특정 용도(목회 활동비 등)로 받지만 정확히 특정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본인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정액으로 지급한 교회는 특정 용도로 지급했다는 것에 만

족하는 반면, 지급한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 받은 자의 소득이 되므로 지급하는 단계 이후부터의 사용은 지급 받은 사람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회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사례비와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받은 경비를 초과하여 개인 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교회가 정액만 지급하고 박봉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목회자가 개인의 호주머니 돈으로 활동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는 꼴이 된다. 즉,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비로 정산 처리하는 경우는 청지기 입장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정액으로 정산 처리하는 경우는 경비 사용 주체를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소한 관점의 차이가 행동 양식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 실비 정산은 귀찮아도 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액으로 지급된 비용을 정리하는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느새 본인이 드려진 현금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어간다.

초기에 교회가 작고, 재정이 넉넉지 않을 때에는 분쟁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어려울 때에는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간증만 있다. 그러다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고, 재정이 확대되면서 초기에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내가 현금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

경비를 집행하는 사람은 ‘나는 경비를 바르게 사용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돈이므로 특정인이 알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를 사용하여 요구불 예금을 포함하는 현금(이하 ‘현금’으로 표시) 거래의 증가 및 감소를 표시하는 수지 결산서만 작성하고 있다. 현금의 증가 및 감소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역별로 요약한 보고서가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 결산서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이 이처럼 단식부기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 결산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한계성과 취약성이 있다.

### 01 단식부기의 한계성과 취약성

####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회계 처리 및 업무 실수

단식부기는 한 가지 항목의 증가 및 감소를 관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므로 수입과 지출의 원인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즉, (전체)예금의 입금과 지출이 발생한 사실을 일자별로 기록하지만 (개별)예금 잔고의 증감을 별도로 관리

하지 않으므로 수입(지출)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이중 기록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개별 계좌별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현재 시점의 각 예금 계좌별 잔고를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매월 말 또는 특정 시점의 자금 현황을 파악하려면 담당자가 개별 예금 통장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는 한계성을 내포한다.

이런 현상은 예금뿐만 아니라 교회가 관리해야 할 모든 재산과 부채에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불가피하게 교회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목록 등을 별도의 수작업으로 관리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별도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언제 적립되었으며,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하는 비품들이 언제 구입되었으며, 구입한 비품들이 어떻게 사용 또는 처분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다.

통상 복식부기의 장점 중 하나로 자기 오류 검증 기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복식부기에서 회계 처리는 두 가지 이상의 계정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실수가 있더라도 스스로 차이(오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다. 마치 여행을 갔다 와서 한 사람이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실상과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와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실상과 다르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쪽만 관리하는 단식부기로 회계 처리를 하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밝혀낼 수 없어서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없다.

###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 증가

결산 보고서는 특정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전달하는 것인데,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 결산서만 작성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거나 아예 그 의미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교회가 관리해야 할 재정에는 수입·지출 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입이 예상되는 자산, 장래의 지출이 예상되는 부채도 관리해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수지 결산서는 이런 정보를 표시하지 못한다. 회계 보고 때 이번에 특별기금으로 얼마를 적립하였다고 하면 적립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그 기금으로 얼마를 더 적립해야 할지, 적립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일지,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미리 예상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재정 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을 다하려면 단식부

기애 의한 수지 결산서만이 아니라, 복식부기에 의한 대차 대조표도 꼭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지 결산서는 현금(예금 포함)의 수입 또는 지출을 동반하는 거래만 기록하여 합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또는 비품 등 고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상실분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품 등을 보수하거나 추가로 구입해야 할 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단순한 경상적인 현금의 입출과 비경상적인 수입·지출(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경우)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보고해서, 정상적인 활동의 결과와 비경상적인 자금 운용 수지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부정이 발생할 위험성 증가

수지 결산서는 교회에서 보관하는 현금 시재와 예금간의 거래(은행 입출금 거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특정 기간에 예금을 인출하여 유용하다가 결산기 전에 다시 입금시켜두면 장부 기록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개별 예금계좌 간의 이동과 현금 인출, 예금 입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 및 부채 목록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또는 부채의 취득(또는 처분)에 관한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려면 몇 개년도의 현금 출납 사실을 다 확인해야 한다(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몇 개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별도의 적립금을 담당자가 남들 모르게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비품을 처분하여 개인이 횡령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수지 결산서가 해당 연도의 현금 기준으로 수입 또는 지출만을 표시하고, 비현금 자산 또는 부채 관련 거래를 표시하지 않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방식의 재정 운용’이라는 제도에 의지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은혜에 의존하여 바르게 고쳐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고, 고양이를 유혹하면서 생선을 먹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이다.

교회에서 재정 담당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차를 바꾸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일부러 시험에 빠

뜨리고 은혜로 이겨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재정 담당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이다.

이런 단식부기의 단점과 문제점 때문에 교회도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이 투명한 재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식부기가 어려워서 복식부기의 사용을 주저하는 교회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영리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그 어렵다는 복식부기를 배워서 효율적으로 결산해서 주주들에게 보고한다. 사람들이 맡겨준 재물을 관리하는 영리기업 담당자들도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교회 재정 운영에 어려워서 도입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맡기신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 재정 관리자 업무의 중요성이 영리기업 재정 담당자의 업무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된다.

복식부기가 어렵다면 교회는 재정 담당자가 복식부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재정 담당자는 복식부기를 배워서라도 교회의 재정 관리를 영리기업보다 훨씬 더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1년을 숫자로 정리하게 된다. 개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기업과 비영리단체, 교회에서는 1년의 결과를 정리하는 결산 작업을 진행한다. 결산서를 보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고도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결산서를 보면 1년 동안의 과정을 파악하여 추정하기는커녕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다.

결산서는 1년 동안의 활동 내역을 대화체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딱딱한 숫자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숫자는 이를 보는 사람에게 1년 동안 활동 내역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보는 사람은 1년 동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장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즉, 표시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결산서는 이를 작성한 사람의 생각이 결산서를 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회 결산서는 결산서 자체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교회마다 사용하는 계정과목 체계와 명칭이 서로 다르고, 결산서에는 지출한 항목들을 가능하면 예배, 선교 또는 구제 등 재정 지출이 성경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계정과목 명칭만으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 01 사례로 본 교회 결산서의 문제

그렇다면 교회 결산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 성역비(목회 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다

목회자가 기본 생활비로 수령하는 항목 이외에 추가로 실제 발생에 따른 정산 없이 정액으로 수령하는 금전(자녀 교육비, 목회 도서비, 심방비 등)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른 곳(장학금, 교육비, 예배비, 도서비, 선교비 등)에 분산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수령하는 금전을 개인 생활 차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생활비와 교회 차원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 그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목회자 입장에서의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즉,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고 있으므로 목회자가 수령하는 모든 금전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지출이라고 전제해버리면, 목회자가 가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도 교회 재정에서 감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재정은 공동체인 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되기보다는 목회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사용이 좌지우지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의 생활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교회 차원에서의 활동비는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누가 수령하든 수령한 사람 개인에게 전속되는 성격의 인건비로 보는 것이 맞다.

- 실제 지출액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 해당 항목의 사용을 특정인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자녀 학자금을 추가로 부담하여 지급하면서 장학금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

고, 이 기준에 적합한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경우라면 장학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면, 이는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목회자의 기본 생활비로 자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목회자의 생활비에서 자녀 학자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설교 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심방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실제 지출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사례성 인건비 성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 교육전도사에게 지원하는 등록금은 장학금이 아니다

전임 사역자가 아닌 파트타임 사역자 중 신학생 신분으로 사역하는 부교역자에게 신학교 등록금을 교회가 지원하는 경우 이를 장학금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장학금은 교회가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만약 장학금 지급에 파트타임 사역 여부가 전제가 된다면 이는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교회 내 사역을 전제로 한 인건비 성격에 더 가깝다.

#### 주일 점심때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는 친교비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 내에서 활동하면서 주일 점심을 공동 식사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 교회에서는 교사 또는 성가대원들을 중심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주일 점심 때 떡을 떼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식당 운영비를 회계 처리하면서 내부 관리비의 일종인 친교·교제비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이를 ‘예배비’ 또는 ‘전도비’로도 표시하고 있다. 물론 떡을 떼는 식사를 예배의 일부분으로 확대하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사 시간을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로 지도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회계 처리로만 예배비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지급 대상에 따라 사례비의 명칭이 바뀌면 안 된다

간혹 담임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성역비(또는 예배비)’, 교육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교육비’, 심방 담당 부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심방비’라고 구분한

다. 이런 계정과목 분류는 비용 집행의 중심 역할처 기준으로 집계를 내는 방식이지만, 비용 집행처의 중심이 중복되는 경우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담임 목회자는 교육을 전혀 안 하는가’, ‘교육전도사는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가’,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계정과목 분류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성역비’라는 명칭은 너무나 성스럽게(?) 느껴져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게 하며, ‘성역비’라는 계정과목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한다.

위에서 소개한 몇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비용이 지출된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항목을 표시하기보다는 지급된 항목을 선교, 전도, 장학금 등 제3자가 보기에 성스럽게(?) 보이도록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재정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현금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내부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이 더 많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up>(1)</sup>

교회의 결산서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결산서를 만드는 의미가 반감된다. 다양한 계정 분류 체계로 사람들을 혼돈하게 한다면 차라리 교회의 역할에 따른 분류로 교회 외부 지출(선교비·구제비·전도비 등), 교회 내부 지출(교육비·인건비·예배비·일반 관리비·재산 관리비 등)로 대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후 각 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분하여 개별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면 계정과목 분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다. 그 분류를 통해 교회가 재정을 어느 곳에 더 집중하여 사용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

교회마다 혼동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재정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분명히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가 이 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듈다.

(1) 이런 사실은 ‘건강한 교회 재정화립 네트워크’가 2006년 8월에 발표한 재정 분석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 결산 손에 잡히는 결산 정보

### 01 비율의 의사소통

두 눈을 깜빡이면서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무의미한 숫자들의 나열로 보이는 예·결산 서류들, 그리고 많은 성도를 자괴감에 빼뜨리며 방관자가 되게 만드는 숫자들….

계속 이대로 해야만 하는가? 숫자는 또 다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도구지만, 전달하는 의미가 내포된 숫자적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함이 의사소통을 단절하게 만든다.

예·결산 서류는 ‘수(數)’의 형태로 표현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또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위탁하신 재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숫자에 담겨있는 언어적 의미를 이해할 때 예·결산 서류

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결실을 나누는 도구가 되고, 교회의 사역과 정체성을 증거하는 합축적인 사역 보고서가 된다.

### 02 예산과 결산의 의미

공동의회에서 결산 서류를 승인하는 것이 단순히 ‘결산 서류가 회계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잘 기록되었다는 점을 감사가 보고하고, 이를 교회 공동체가 승인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이는 회계적 절차에 불과하다. 기업이나 일반 단체가 감사 보고를 하고, 총회에서 결산서를 승인하는 것은 위임자가 위임한 내용에 대한 수행 결과를 만족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교회가 관리하는 재정은 교인들이 재정 담당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것이다. 따라서 결산보고는 재정 담당자와 감사가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해 동안 관리한 재정의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올려드리는 과정이라는 점이 본질적인 의의다.

결산은 한해 동안의 활동 내역을 문자가 아닌 숫자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결산서에는 한해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숫자의 형태로 녹아 들어 있다.

공동의회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이를 파악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교회에 맡겨 주신 재정 관리의 청지기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서는 다음 해에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문자가 아닌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예산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은 재정 담당자들이 제시한 계획을 교인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서에 맡겨 있는 계획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계획이고, 이에 헌신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될 때 재정 관리를 맡은 자로서 바른 출발점에 서게 된다.

### 03 예·결산서 작성 기준

‘구슬이 서 말이라도 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1년 동안의 재정 처리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일정한 원칙으로 분류하여 뛰어야 재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예·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눈에 교회의 방향성과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를 보는 사람은 먼저 숲을 보는 관점에서 교회의 재정적 흐름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단순한 금액을 항목별로 나열하기보다는

예·결산서 이용자가 한눈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구분 기준으로 요약한 요약표, 각 항목별 비중을 비교한 비율, 전년도와 비교 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결산서 검토 때 예산 대비 증감액을 비교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새해 계획(예산)수립시 동일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04 예·결산 보고서의 효율적인 검토 방법

예·결산에 참여하여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숲을 보고, 그 후에 나무를 보는 방법이다.

#### 숲을 보는 정보 파악

① 목회 계획과의 일치 서술형으로 표현한 목회 계획과 숫자로 표현한 예산서의 방향과 중요성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체 대비 비중의 균형감 개별 항목의 금액 규모보다 전체 예산 대비 항목별 비중을 비교하면서 전체 방향과 중요시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③ 전년도 대비 증감 전년도 발생(실행)액과 증감액, 증감 비율을 비교하면서 재정 관리의 변화 추이를 주목하여 본다.

**④ 예산 대비 차이 분석** 결산서 검토 때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의 차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고민한다.

**⑤ 예비비 비중** 예산 수립시 미확정 항목에 대한 유보 금액으로 표시하는 예비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또한 예비비 계정이 결산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 예비비가 본 항목으로 전용된 내역(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⑥ 총괄 계정 및 모호한 계정** 예·결산서 계정과목에서 총괄적 합계 개념의 계정이 사용된 경우,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같이 검토한다. 또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거나 혼동되는 모호한 성격의 계정에 대해서는 작성자에게 분류의 기준과 성격에 대해 질문하여 확인한다.

**⑦ 기금 회계 분리 처리의 상관성** 특별회계로 분리된 회계 단위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내부 간 거래를 제외한 통합 예·결산서를 같이 검토한다.

**⑧ 정액(定額) 결산 금액** 결산 항목에서 사례비 등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는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금액 단위가 만 원 이상의 일정액 단위로 집행된 항목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다.

**⑨ 계정별 상관성 검토** 사례비와 사회 보험료가 일정한 비율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준이 되는 항목의 경우 상관 비율 관계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 나무를 보는 정보 파악

예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항목별 예산’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항목별 예산 및 결산서에서 주의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sup>(2)</sup>

**❶ 장학금** 특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학비를 지원한다면 본질적 의미의 장학금이 아니다. 지출액이 장학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대상이 될 때다. 특정 직분자의 자녀에게만 학비를 주거나, 사역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해당자에 대한 사례비다.

**❷ 예배비(주일 식당 운영비)** 주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식당 운영비를 예배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떡을 떼는 교제 성격으로 제공할 경우는 의미가 있으나, 성가대원, 교사 등 특정 봉사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예배비로 분류할 수 없다.

**❸ 구제비** 구제비 지급 대상을 반드시 교회 외부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구제비가 전액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지급되는지, 불특정 외부인에게도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❹ 사례비**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비는 사례비라고 집합적으로

(2) 전반적으로 선교, 장학, 구제, 예배 등 교회의 본질적 성격의 활동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것이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양속히 물어 보아야 한다.

표시하기 보다는 담임 교역자 사례비는 예배비, 교회학교 담당 사역자는 교육비, 정액 활동 보조비는 목회 활동비, 교역자 자녀 학비 지원금은 장학금 등 다양한 성격의 계정으로 분산시켜 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전도비** 새신자 과정 개설 비용은 전도비라고 하기보다는 교육비 성격이다. 외부에 복음을 전하는 데 발생하는 지출이 전도비로 분류되어야 한다.

## 05 예·결산 공동의회에서의 바람직한 정보 파악 및 공유

중·소규모 교회에서는 재정 담당자가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결산서를 만들게 된다. 본인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작성한 서류를 난도질하면서 공격과 방어의 개념으로 예·결산 회의가 진행되면, 교회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에 상처만 남게 된다. 또한 너무 앞서가면 혼자 잘난체한다는 편찬 아닌 편찬으로 떠돌림을 당하기 쉽다.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① 무엇인가가 틀렸다, 잘못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의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결산 서류는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적 정리다. 몇 일, 몇 주에 걸친 작업 결과물을 예·결산서를 접한 지 몇 분만에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모르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에서 먼저 틀렸다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면 서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부담과 함께 때로는 인간에 대한 상처로 남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으니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생각을 표현하면, 회의가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 된다.

② 본인이 파악한 정보를 요약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예·결산 서류의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특이 사항을 발견했다면, 남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본인이 파악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작성자에게 확인을 구하자. 그러면 오히려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면서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후에 본질적 접근을 하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 監査만 할 것인가, 感謝도 할 것인가?

매년 결산기가 끝나면 각 교회마다 공동의회에 결산보고와 감사 보고를 하게 된다. 교회마다 감사가 보고하는 내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작과 끝을 장식 한다.

“본 감사인은 … 별첨 수지 결산서(또는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으며…, 별첨 수지 결산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 내용의 의미를 곰곰히 뜯어보면 감사의 성격이 결산서가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주 관점이다. 이는 감사(**監査**, audit)라는 업무 영역이 기업회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특정 조직(기업 또는 단체)의 재무제표가 일정한 기준(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원칙)에 맞추어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기업회계의 관점을 교회가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시하는 결산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감사 해야할지, 어떻게 감사 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감사의 성격을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관점에서 보게 되므로, 감사인이나 피감사인이나 모두 부정 적발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감사인은 공격적이 되고, 피감사인은 방어적이 되어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다. 아니면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형식적인 절차로 감사를 마치는 경우도 많다.

기업 결산서는 주주들의 자본(기업) 운영을 위탁 받은 경영진이 활동한 경영 결과이므로, 자본 운영을 의뢰한 위탁자(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의미 있겠지만, 교회 재정 운영을 교회에 맡긴 주인은 하나님 이므로 교회 재정 운영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교회는 재정을 관리할 청지기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청지기직을 부여한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결산보고는 단순히 “재정수입과 지출이 이리이러하여 차기 이월액이 얼마나”라고만 얘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재정을 관리할 책임을 위임 받은 청지기로

서 1년 동안 맡겨주신 재정의 규모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와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즉, 재정 결산보고는 재정에 관한 추수 감사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기에 재정 결산보고의 시간은 재정 담당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작업은 재정 담당자가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책임에 대하여 공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로서 관리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재정 결산에 대한 감사 작업은 결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監査)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손길에 대한 감사(感謝)한 일들을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교회 재정 결산과 감사에 대한 의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 드리는 절차로 바뀔 때 결산과 감사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 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잘잘못을 따지는 지적과 방어의 입장이 아니라 재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더 많이 찾아내느냐의 즐거운 작업이 되고, 그 동안 실수하였거나 잘못한 부분들을 찾

아서 개선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이런 변화는 재정 담당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재정에 대한 교회의 청지기적 역할을 인식할 때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아픔 속에서 개선해가는 과정도 감사 보고에 포함하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같이 알고, 같이 고민하며 해쳐나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결산·감사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교회가 활동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백서 형식 등)로 전 교인이 공유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제사장이 드려진 제물을 관리하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드려진 현금(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교회의 재정 관리가 소수의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를 같이 고민하고 감사할 때에만 감히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재정을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시 **왜 교회 재정을  
공개해야 하나?**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경영을 위임한 이후 위탁자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임원들이 경영 결과로서 작성한 결산서를 보면 경영을 잘 하였는지 평가하고 계속 경영을 위탁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임원들이 주주들에게 결산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주주로서의 알 권리(知情權)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법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권을 법<sup>(3)</sup>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위탁자로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교회 재정 공개 여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

지는가 하면, 재정 공개로 발생하는 진행의 어려움을 막고자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재정 공개 요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를 고민하고, 담임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재정 공개를 막을 수 있다는 무용담을 나누는 현실 앞에서 재정 관리와 공개의 의미와 속성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자로서의 출자자’와 ‘관리자로서의 경영자’의 정체성이 구분되기에, 재정 관리의 주체와 보고의 주체, 보고의 대상, 보고의 범위 등이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정 관리는 누가 누구에게 관리를 위임하는가?

### 01 교회 재정 관리의 역학 관계

영리기업의 경우 출자자가 관리를 위탁하고, 비영리법인은 출연자들이 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현금·연보를 출연한 개인들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관리 책임을 받는 독특한 이중적 구조다. 물론, 이중적 구조지만 수탁자는 ‘교회’이기에 교회 재정 관리 수탁자로서의 ‘교회’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3) 상법 제466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개체로서의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sup>(4)</sup>을 의미한다. 위탁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다. 교회 재정 관리의 구조는 개체로서의 교인들이 개체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재정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다.

이런 관점에서 재정 보고·재정 공개는 2차적 위탁자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1차적 위탁자인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02 교회 재정 관리의 공공성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시대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와 ‘일반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일반 공동체인 이방 족속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했다. 이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인 일반 세상·사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한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나라 백성을 간

의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임으로 일반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 공동체로 나아오게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의 공동체적 연장이며, 완성될 하나님나라의 예비적 구원<sup>(5)</sup>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공공성이 의미를 가진다.

재정 보고는 교회의 사역 결과를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교회 재정이 공동체의 이상 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관리 결과도 일반 공동체에 공개됨으로써 일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신앙 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재정 공개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 03 교회 재정 관리의 투명성

투명성은 재정 공개로 확보되는 속성이다. 투명하다는 것은 유리창 너머로 보는 것 같이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해 관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제약 없이 접근 할 수 있을 때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하다는 것이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면 드러난 과정들을 보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바른 재정 관리의 ‘충분조

(4) 한스 킹, 〈교회란 무엇인가〉, 문도출판사, 2012, pp64~65

(5)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IVP, 2002, p69

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내가 수행한 결과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나의 오류와 실수를 지적하면 겸허히 개선하겠다’는 청지기 관점의 관리자적 고백과 ‘본인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 04 교회 재정 공개의 질(質)과 양(量)

재정 공개는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되는 정보가 가지는 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재정을 집계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표현하며, ‘회계(會計)’는 특정한 모임(group, 會)으로 집계(計)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의 공통적 속성(계정과목)으로 집계하여, 재정적 사건의 총괄적 의미를 파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하기에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들이 가지는 총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결산서의 숫자적 표현으로 부족한 속성적 정보들을 추가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 05 교회 재정 공개의 걸림돌

##### 효율성과 신속성의 장애물

재정을 공개하면 성숙하지 못한 일부 교인들이 계속 이를 제기함으로 교회가 해야하는 사역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누가 사역을 진행하고, 누가 교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교회가 공동체적 구성원의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힘 있는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하는 것이며, 소수가 교회의 이름으로 다수 교인들의 청지기적 사명을 강탈하는 것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교회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재정을 집행하는 소수만의 고민이라면 이는 교회의 재정 관리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이루어진 결과 이전에 수행되는 공동체적 진행 과정에 의미가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더라도 좀 더 강한 사람이 좀 더 약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공동체로서 가져야하는 모습이다.

## 약한 지체들의 부담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경우, 어려운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하는 염려로 재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여전히 동일한 관점의 몇 가지 질문을 제기 한다.

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지체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배려 이전에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제자로서 입교하는 구성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②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제자로서 교회의 청지기적 주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 관객, 이적과 기사를 찾아 다니던 무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③ 재물을 가지면 심적 여유가 있고, 재물이 없으면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과 맘몬 중 누구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인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또한 구성원들이 같이 풀어갈 사안으로 인식할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회복된다.

## 지역 교회 중심적 사고(思考)

지역 교회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을 모두 외부인으로 보고 재정 정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교회가 폐쇄적 사교(社交)집단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다.

지역 교회는 특정 지역의 구속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역 교회 구성원만의 별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sup>(6)</sup> 즉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적 필요에 의해 여러 곳에 산재하지만 각각 별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지만 선민사상에 갇혀 넘어졌듯이, 세상을 향하여 부름 받은 교회가 성민(聖民) 사상에 갇혀 일반 사회를 품지 못하고 오히려 폐쇄적이었기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 미덕으로 보는 덮어주는 관행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기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앞세워,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사랑의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죄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6) 한스 킹, 전계서, p67

서는 정확히 검토하고, 시시비비를 가린 이후 잘못에 대한 회개와 개선이 있을 때 공동체가 포용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비른 사랑이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덮기만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 문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교회 재정 관리는 교인들에 대한 수탁자적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수탁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구조이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수탁자적 책임을 면제 시킬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

### 투명한 정보 공개의 단점

교회 재정 사용에서 구제비 지출, 장학금 지급 등 개인의 자존감(Privacy)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

- ① 비용 지출에 대한 원칙(또는 규정)을 사전에 정하고,
- ②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 ③ 특정인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와 같은 공동 의사 결정기구에서 결정하고
- ④ 공동 의사 결정 기구 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재무 정보가 많이 노출될수록 경쟁 기업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의 지분만 가져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공개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회사에서도 소수를 이해 관계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소수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보다 더 공동체성이 강해야 하는 교회에서 교인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재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교회에 과연 공동체성이 있는가? 이런 교회를 보면 일반 사회가 어떤 생각을 할지 의문이다.

재정 공개를 제한하면서 지키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내어놓아야 한다.

## 교회의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기독교인은 사회에 해(害)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아프고, 어둡고,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담당하고, 그 사랑으로 사회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더구나 사회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사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도덕’이고,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과 의를 요구하는 개념이 ‘종교’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의 잣대로 평가하는 ‘바름’의 개념이 사회에서 공감하는 도덕적인 ‘바름’의 범주에 훨씬 미치지 못함으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셨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이런 명령은 바울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 3:8)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수님은 부활 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셨다. ‘땅 끝까지 세상을 향해 증인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다.

착한 행실의 주체는 개인적 차원의 착한 행실뿐만 기독교인 각 개인의 집합체인 교회의 착한 행실도 포함하며, 그 범위는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여호와 앞으로 이끌도록 부름 받았다는 의미에서 택함 받은 족속인 선민(選民)으로서의 의의가 있었듯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비기독교인들을 십자가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들어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교회 정관의 규정으로 재정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 요건을 까다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교단과 지역 교회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면 교회가 이단(또는 반기독 무리)으로부터 공격 받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집합적 공동체다. 따라서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즉, 교인들은 교회 재정 관리가 잘되는지 참여하고 관리할 ‘권리’이자 ‘의무’를 갖고 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 관리 책임을 면제할 권한이 없으며, 교인들이 교회 재정 내역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힘들게 제한하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재정 관리 책임을 박탈하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세상이 교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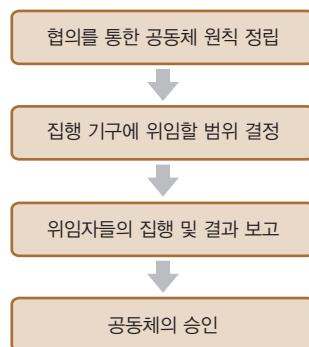
3

모범적인 교회 재정  
관리 규정

### 3.1

## 바람직한 교회 재정 관리의 흐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가진 신앙의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체 간의 의견을 조율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문서로 선언한 원칙을 근거로 대리자들을 세운 후, 위임하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임받은 자들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공동체의 이름으로 승인한다. 즉, 교회 공동체 전체의 행위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3.2

## 모범적인 교회 재정 관리 규정

아래에 제시되는 정관 및 규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재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교회 재정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재정 운용의 성경적 원칙 또는 이를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별 또는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성인 기준으로 출석 교인 규모가 150명 이상, 연간 현금 수입 규모가 1억 5000만 원 이상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회계 담당 사무원을 내부에 별도로 두는 경우로 한다. 물론, 회계 담당 전임 사무원이 아니더라도 회계를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회계 담당 전임 사무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관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이며, 정관에는 재정 운영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 정관(또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사항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조직) : 교회 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의회(성결교-사무총회 / 감리회-당회) : 등록 교인으로서 세례(침례)를 받은 자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들을 결의한다.

- ① ….
  - ② 감사의 선임
  - ③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④ 감사 보고의 승인
  - ⑤ (주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⑥ 교회 정관 및 세부 규정의 제정과 개정

- ①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  
② 교회 행정과 재정에 대한 논의

다) 예산조정위원회 : 각 부서의 장, 장로 및 목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들을 처리한다.

- ## ① 부서별 예산안 심의 및 조정

라) 당회(기획위원회—감리회) : 장로 및 목사로 구성되며 영적 사무를 처리한다.

- 1 ...

교단마다 내부 운영 조직의 명칭이 각각 다르지만 최소한 다음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기 규정은 재정에 관한 규정만 예시하였으므로, 개 교회에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으로 기구 명칭과 역할, 구성원 자격 및 선임 방법, 임기, 회의 성원 및 결의 방법 등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최고 의사 결정 기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교회 공동체

등록 교인 전체가 구성원이 되며, 교회의 정관(기본 규약) 제정 및 개정, 재정에 대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재산권의 변경에 대한 결정 사항은 고유 권한이 된다. 교회의 재산이 ① 등기(또는 등록)가 필요하고 ② 재산의 가액이 교회 전체 재산 가액의 5%를 초과하거나 전체 연간 수입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요)재산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재산권 변경 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결정이 필요하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명칭은 교단 또는 개 교회별로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공동의회 : 장로회
  - 당회 : 감리회
  - 사무총회 : 성결교

## ② 실무 집행 및 심의 기구

항을 집행하고, 집행 과정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로서 각 부서 부서장, 집사회장, 목양회장 등으로 구성하는 사역 자회의 체제 또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제직들로 구성되는 제직회 체제로 구성될 수 있다. 사역자회의 체제에서는 각 부서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직회 체제에서는 모든 제직들이 각 부서에 소속되어 부서별 계획과 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조정하는 별도의 예산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 제직회의 명칭은 교단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제직회 : 장로회
- 임원회 : 감리회
- 직원회 : 성결교

**③ 예산 조정 기구** 제직회로는 부서별로 작성한 예산 초안을 교회 전체 차원에서 조정하는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구는 각 부서의 장, 집사 대표, 장로 대표, 담임 목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치리회** 장로 및 목사로 구성되며 교회의 영적 사무를 치리 한다. 치리회도 교단별로 명칭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장로회, 성결교 : 당회
- 감리회 : 기획위원회

제○○조(재정 운용의 원칙) :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가)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나) 균형 : 전도,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 방향에 따라 균형 있게 지출해야 한다.

다) 총액 표시 :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해당 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해야 한다.

라) 투명성 :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 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전성 : 재정 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 한다.

①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은 할 수 있다.

② 반기(또는 회계 기간)별 수입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③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 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 (zero base), 잉여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 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바) 문서화 : 재정 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사) 기능의 분리 : 재정 집행 승인, 집행, 기록 및 사후 감독 기능은 각각 분리해야 한다.

❶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록하는 경우 재정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총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❷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路 13:8)라고 하였으며, NIV에서는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의 표현으로 빚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며, 차입금 상환 계획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조(수입) :

- 가)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현금, 현물, 기타 수익으로 한다.
- 나)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 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① 현금 활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② 현금 이외의 교회 수입은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실비변상 차원을 넘어서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제○○조(회계연도) :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월 1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는 결산 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개 교회의 상황에 맞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등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조(회계 처리 방식) : 교회의 회계 처리는 (재정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복식부기는 수입·지출 발생 시 재산의 증감만 관리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원인 또는 결과 성격인 상대 계정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통상 차변 및 대변의 방식으로 전표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② 복식부기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단식부기의 다음과 같은 한계성 때문이다.

- 증감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 자기 오류 검증 기능이 없다.
- 현금 및 (요구불)예금 외의 재산과 부채를 관리하지 못 한다.
- 현금과 예금을 통합 관리하므로 현금과 개별 계좌의 잔고 확인이 즉시 되지 않는다.
- 정상적인 수입·지출 항목이 아닌 항목이 수입·지출로 반영되어 수지결산에서 규모를 왜곡시킨다.
-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보유 재산의 사용분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음으로 자산 교체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 장기적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담당자의 자의적인 자금 운용 또는 자금 유용을 파악할 수 없다.

③ 교인 수가 50명을 초과하거나 연간 현금 수입액이 1억 2000만 원(월 평균 1000만 원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 규모가 소규모라고 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 방식으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시 교회의 경우 인원 수보다는 연간 재정 운영 규모 기준을 적용하며, 농어촌 교회의 경우 교인 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제○○조(특별회계) :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 하되, 결산 때 구분 회계 보고서와 통합 회계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으로 드린 현금에 대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교회 전체적으로 통합한 보고서를 만들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예산) :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 계획에 따른 예산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교회가 다음 연도의 목회 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정시켜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조(예비비) :

- 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 나) 예비비 지출 시 제직회(또는 예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재정 담당자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결산 때 별도로 보고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비비 사용 때 예산을 통합·조정하는 기구의 승인이 필요하고, 사용한 예비비는 예비비로 계정과목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용도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여 결산 때에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이다.

제○○조(결산 및 공시) : 교회는 결산 감사 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 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가) 예산서

- 나)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 다) 재산 현황표(대차대조표)
- 라)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 마) 운영 성과표(활동 보고서)
- 바) 감사 보고서

**① 결산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예산서** 다음 연도의 교회 목회 방향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과목별로 정리한 표다. 전 교인이 함께 고민하면서 작성한 예산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교회가 관리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된다.
- **수입·지출 결산서** 특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운영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과목별로 정리하여 표시하는 결산서다. 이 결산서는 경상적인 소비 수입·지출을 표시하는 ‘일반 수지 계산서’와 일반 수지뿐만 아니라 재산 관계 수지도 포함하는 ‘자금 수지 계산서’ 두 가지로 구별된다.
- **재산 현황표(대차대조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회가 보유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잔액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결산서다.
-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의 각 항목별로 잔액 내역을 표시한 명세서다. 교회의 재산 또는 부채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 **운영 성과표(또는 활동 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순자산

(자산–부채)의 증감을 가져오는 항목을 기준으로 항목 별로 정리한 결산서다. 수지 결산서가 자금의 수입·지출만 기록했다면, 운영 성과표는 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활동 결과도 포함한다.

- **감사 보고서** 결산서는 아니지만 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서, 내부 및 외부의 감사 보고서 모두가 포함된다.
- ② 소규모 교회의 경우 상기 결산 서류 중 재산 현황표, 운영 성과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재산 및 부채 목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③ 장기적으로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표도 결산서의 일종으로 포함시켜야만 재정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조(재정 담당자) :**

- 가) (자격) 재정 담당자는 무흠 입교인으로서 재정 관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없는 경우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나) (의무) 재정 담당자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재정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① 재정 담당자는 무흠 입교인 중 재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력 한계상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기 시작 전에 담당자가 재

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계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❷ 재정 담당자는 청지기의 두 가지 속성인 ‘충성’과 ‘지혜’(눅

12:42 참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 제○○조(감사) :

- 가)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 나)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다) 감사는 감사 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해야 한다.
- 라) 교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 보고 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마) 내부감사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인 ‘기독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❶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예산 수립 또는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집행 부서의 장은 감사가 될 수 없다.

❷ 감사는 업무(행정)감사와 재정(회계)감사 두 부문에 대하여 실시한다.

❸ 재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공개·비치한다. 교회가 공개하는 재정 내역은 교회의 활동 내역을 표시하므로, 교회가 행한 결과들을 누구라

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❹ 감사는 소형 규모의 교회(교인 수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감사가, 중형 규모의 교회(교인 수 300~1000명)인 경우에는 교단 소속 교회별로 교차하여 감사한다. 그리고 대형 규모의 교회(교인 수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가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❺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및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재정 집행 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회 내부에 전문적인 감사 지식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오랜 공동생활로 독립성 확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은 감사의 기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내부 인력으로만 감사를 하는 것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형 규모 이상의 교회는 교단 내 교회별로 교차하여 감사 역할을 수행하거나 전문적인 ‘기독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조(재산 관리) :

- 가)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나) 교회는 공동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의 취득, 처분,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 다) 교회가 취득하는 재산은 교인 총유(總有)로 한다.

라) 교회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교회 명의로 등록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동의회 의장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마) 재정 담당자는 매년 교회의 재산 변동 내역을 결산서 부속 서류로 제출하고,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교인들이 열람을 요청하면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❶ 교회 재산 명의는 교단별 ‘유지재단’ 명의 또는 개 교회 명의로 등록(등기)할 수 있으며, 개 교회가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회 명의로 할 수 있다. 총유(總有)는 법인격이 없는 교회의 경우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❷ 총유의 형태에서는 교회의 재산을 교인들이 사용·활용할 수 있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교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의 목적으로는 사용·활용할 수 없다.

❸ 대법원 판례(2004다37775, 2006·4·20)는 법인이 아닌 개 교회의 경우 소유권을 교인 총유로 인정하고 있다.

#### 제○○조(사례비) :

가) 교회 유급 직원을 제외한 일반 성도의 봉사에 대하여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교회는 전임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하되, 그 기준 금액은 말은 역할에 따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 특정인에게만 사용 권한 또는 혜택이 부여되는 모든 지급액은 사례비로 분류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한다.

❶ 평신도 사역은 대가를 바라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급 정직원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봉사 활동으로 분류하여 사례비가 없는 것으로 한다.

❷ 필요를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생계비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 제○○조(퇴직금) :

가) 1년 이상 수고하고 퇴임하는 전임 교역자 및 유급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나) 퇴직일 기준 월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속 연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다) 교회는 전임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장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연도 퇴직금 추가 발생액을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별도 계좌로 적립하며, 별도 적립 시 퇴직금 지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평신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속 연수 계산 때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제○○조(세금) :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회가 정직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혜택, 지방세 감면 혜택 등

세법상 특혜를 받고 있다. 교회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항과는 별도로 교회는 세법상 부여하는 다음의 협조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직한 납세 문화와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세무 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용 을 분담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납세하도록 돋는 것은 국민 각 자가 부담해야 할 복지 후생적 사랑의 분담을 최소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교회가 비용 지출 시 현금 으로 결제하면 상대방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 이 크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대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정확하게 계 산해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및 원천세액 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의무

#### 제○○조(재정에 관한 규칙) :

- 가) 재정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나) 재정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조(개정) : 본 규정(또는 정관)은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규정을 승인한 주체만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또는 정관)상 의결정족수 구분 기준에 따라 개정에 대한 의결정족수도 결정 된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교단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02 정관(또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규칙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교회의 모든 활동에 따르는 예산의 편성 및 업무 집행을 정확하게 처리하며, 교회의 재정 상태를 명백히 밝힘 과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재정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실 질적인 적용 과정을 정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교회 재정에 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정 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행한다.

- ① 예산편성, 집행, 결산의 실시
- ② 자금의 출납, 보관, 조달, 운용
- ③ 유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 ④ 회계에 관한 전표와 장부의 기록, 보관
- ⑤ 결산서의 작성, 보고
- ⑥ 감사, 보고

정관이 선언적 규정인 반면 하부 규정인 규칙은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규칙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완 성격을 지닌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차대조표일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일을 의미한다.
  - ② 적립금은 교회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 계정을 의미한다.
  - ③ 경상수지 잉여 차액은 당기의 순자산 증가액을 의미한다.
  - ④ 금액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밝힘은 건별 수입·지출액이 연간 현금 수입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가. 50억 원 초과 : 0.5%
- 나.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
- 다. 3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
- 라.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
- 마. 1억 원 이하 : 200만 원

금액적 중요성은 재정 운용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 교회의 규

모, 연도별 규모의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해야 한다.

#### 제4조(재정 담당자의 의무) :

- ① 재정위원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힘쓰며,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정확·신속하게 기록·계산·보고하고,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 ② 무흠 입교인 중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재정위원을 선임한다. 불가피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재정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유포할 수 없다.

❶ 대부분 교회 재정 담당자들은 전문 지식 없이 재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교회는 재정 담당자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부 교육이 어려우면 외부에 위탁해서라도 교육받아, 준비된 자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❷ 재정 담당자는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

**제5조(재정 관련 서류 보존 기한)** : 교회는 재정에 관한 서류를 회계 연도 종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① 회계연도별 결산서 : 영구
- ② 회계장부 및 전표 : 10년
- ③ 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 : 10년
- ④ 보조장부 및 기타 : 5년

부피가 커서 계속 보관하기에 부담이 되는 보조장부 등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보관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증빙서류, 기초 회계장부, 전표는 10년 이상, 결산서는 교회의 역사를 의미하므로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

## 2장 [예산 관리]

제6조(목적) : 예산은 교회의 목회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정 운용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❶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 ❷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지체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
- ❸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맡겨주신 재정을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시작점이다.

제7조(예산 기간) : 예산의 편성 기간은 1년 기준으로 월 단위 예산 수립을 지향한다.

예산은 회계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계절별 또는 월별로 시행하는 행사의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예산 집행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월별로 변동이 거의 없거나 전체 예산 규모가 작은 경우(연간 예산 1억 원 이하)에는 연 단위 예산 설정도 무방하다.

### 제8조(예산의 종류) :

- ① 교회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경상적인 현금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경상적인 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건축 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하는 수입과 이에 대한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경우의 회계를 말한다.
- ③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목적, 기한을 분명히 한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작성 및 승인) :

- ① 예산은 목회 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 ② 예산조정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 수립을 위한 지침을 회계연도 개시일 전 2개월까지 부문별 예산 수립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 ③ 각 부문별 예산 수립 담당자는 회계연도 개시일 5주 전까지 해당 부문별 예산을 예산조정위원회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 조정된 예산을 목표 예산이

라고 한다.

④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 3주 전까지 제직회는 예산을 심의 한다.

⑤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 2주 전까지 예산을 공동의회 구성 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공시한다.

가. 목회 계획서

나. 예산 수립을 위한 지침

다. 수입·지출 명세서

라. 인건비 명세서

마. 추정 자산 및 부채 목록

⑥ 공동의회는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을 승인하며, 승인을 받은 예산을 실행예산이라고 칭한다

제10조(예산의 수정·경정) : 실행예산편성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연도 중이지만 당초 승인받은 실행예산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예산은 최초 예산을 승인한 기관인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예산 승인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수정·경정 예산의 승인 기관도 공동의회가 된다. 즉, 예산을 승인한 기관과 수정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은 동일해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집행) : 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예산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달성을 노력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집행할 때마다 계획과 비교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12조(예산외 지출) : 예산외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승인권자가 예산외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였으면 예산외 지출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전용) : 동일한 최소 분류 기준 내에서의 예산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항목으로 전용하지 못 한다.

- ① 예산 전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소 분류 체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항목은 필요 이상의 지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예산 전용으로 삭감한 계정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다.

제14조(예산의 이월) : 지출예산 중 그 성격상 해당 연도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예비비) : 예견할 수 없는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항목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① 예비비 설정액은 예비비를 포함하기 전 지출예산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감액된 항목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때 제직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
- ③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 항목으로 지출·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지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결산 때 예비비의 사용 내역 명세서를 결산서에 첨부한다.

❶ 예비비의 사용은 새로운 예산의 확정과 같은 개념이므로 사용 전 제직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승인 받은 후 집행은 일반 집행의 관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❷ 예비비는 예산 설정 때 미확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미리 유보하는 개념이므로, 결산서에 계정과목으로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예산 항목을 증액시켜서 표시하고, 사용 때에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❸ 결산 때 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별첨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3장 [자금 관리]

제16조(자금의 종류) : 이 규정에서의 자금이란 현금 및 요구불예금을 말하며 현금은 1~2일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수표, 상품권, 우편환증서를 포함한다.

요구불예금은 기간적인 제한 없이 은행에 인출을 요구할 때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 제17조(수입과 지출) :

- ① 금전의 보관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 ② 금전의 출납은 담당자가 작성한 후 수입·지출 결의서에 의한다.

③ 금전의 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지출 증빙) : 지출 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어야 하지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 결의서 및 집행 담당자의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세법에서는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경우 다음의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때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원인 행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 신용카드 거래
- 현금 영수증 거래

②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 교통비 등 소액의 경비 지출액으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 집행자가 일시·내용·목적·금액을 기록한 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예입) : 주일에 수납된 금전은 재정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날 중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재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실 내부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은행에 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20조(현금 내역 통보) :

- ① 교회는 현금 액수를 개인별 금액이 아닌 종류별 금액 합계액 및 현금자 인원 수를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 ② 재정 담당자는 현금자 본인만 로그인할 수 있는 구별된 아이디를 부여하여 인터넷에서 본인 현금 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월(또는 분기 단위로) 우편 또는 이메일 등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현금 내역(일시, 항목, 금액)을 알린다.
- ③ 교인이 본인의 현금 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 담당자는 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재정위원회는 매년 이듬해 초에 해당 연도의 개인별 현금 내역(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개인별로 통보한다.

공개하는 방법은 주보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제21조(현금 시재) : 출납 담당자는 경상적인 소액 현금 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간 현금 수입예산 총액의 0.3% 이내의 현금 시재를 보유할 수 있다

교회 사무실에서 현금 지출을 대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현금 시재’라고 표현하며, 교회 예산 규모별로 지출 규모가 다르므로 예산 규모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 50억 원 초과 : 연간 예산 총액의 0.05% 이내
-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0.1% 이내
- 3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0.15% 이내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3% 이내
- 1억 원 이하 : 0.5% 이내

**제22조(장부와 시재 대조)** : 출납 담당자는 매일 현금 출납 종료 후 현금 시재 및 통장 잔액을 장부와 대조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매일매일 시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규모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시재를 확인해도 무방하다.

**제23조(은행거래)** :

- ① 모든 예금은 교회 명의로 한다.
- ② 예금계좌는 특별회계 관리 계좌, 수입 계좌 및 경상비 지출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소액 경상비 지출 계좌를 제외하고는 인감 보관자와 통장 관리자를 분리한다.

- ① 교회 예금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
- ② 개인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는 것은 개인 이 예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담당자 변경 때 통장 명의를 변경하는 불편함을 방

지하기 위함이다.

- ③ 교회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등록한 고유 번호가 필요하다.

**제24조(적립금)** :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퇴직급여 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별도로 적립하는 목적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4장 [회계]

**제25조(일반 원칙)** : 교회의 회계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① 회계 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② 회계 처리는 거래의 8요소를 구분하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③ 모든 회계 처리는 총액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며, 상계해서는 안 된다.
- ④ 계정과목의 종류는 목적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 ⑤ 계정과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신설 또는 통합 표시를 한다.
- ⑥ 결산서의 양식 및 계정과목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해야 한다.
- ⑦ 회계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⑧ 회계 처리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⑨ 수익 사업회계는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정하는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 ❶ 단식부기가 가지는 재정 관리의 한계때문에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교회에서는 여전상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되 재산 및 부채 목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 ❷ (총액주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서로 상계하기 전의 총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발생한 회계 사실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 ❸ 계정과목 체계와 종류는 결산서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❹ 계정과목 체계는 전체 규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합하여 재정 규모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❺ 개별 항목이 중요한지는 다음 기준의 충족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중요하다.
  - 수입·지출 항목 : 연간 수입예산액의 5% 초과 때
  - 자산·부채 항목 : 교회 재산 규모액의 10% 초과 금액
- ❻ 교회가 정한 회계 처리 기준은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매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결산서의 정확한 의미 파악과 기간별 비교를 정확히 하려는 것이다.

- ❶ 교회가 출판 등 예외적으로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 사업 부문에 한하여 일반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기업회계 기준서를 준용하여 회계 처리를 한다.

#### 제26조(회계 전표) :

- ❶ 모든 재정에 관한 사건의 정리는 회계 전표로 기록한다.
- ❷ 회계 전표의 종류는 단일 전표 또는 3위식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형식 중 한 가지를택한다.
- ❸ 회계 전표는 증빙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빙을 해당 전표에 첨부해야 한다.
- ❹ 전항의 증빙은 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사건 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재정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이 있다.

- ❶ 경제적 행위의 일시, 성격, 내용, 금액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한 것을 '전표'라고 한다.
- ❷ 전표에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 ❸ 증빙은 회계적 사건의 발생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이에 대한 자금 집행을 증빙하는 서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 제27조(장부) : 회계상 작성할 장부는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보조장부다.

- ❶ 현금출납장 : 현금의 입금 및 출금을 항목별로 일자순으로 정리

하여 기록하는 장부다.

- ② 계정별 원장 : 각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다.
- ③ 보조장부 : 각 계정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속성별로 작성하는 장부다.

제28조(보조장부) : 회계 전표와 장부의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예금계좌별 원장
- ② 유형자산 관리 대장
- ③ 개인별 현금 명세

제29조(장부 마감) : 장부 작성자는 매월 말 및 회계연도 말에는 장부를 각 계정별로 마감해야 하며, 마감한 상황을 승인받는다. 단,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마감한 장부를 매월 말 또는 회계연도 말에 출력한 문서를 승인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월말 또는 연말에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장부가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30조(결산서) : 이 규정에 의해 주기별로 작성할 결산서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주 : 주계표
- ② 매월 :
  - 가. 월계표

나. 시산표

다. 예산 대비 수입 지출 보고서

③ 기말 :

가. 예산 대비 수입 지출 보고서

나. 재산 현황표(대차대조표)

다. 재산 및 부채 목록

라. 운영 성과표(활동 보고서)

마. 부속명세서

월계표는 특정 월에 발생한 전표만 집계한 것이며, 시산표는 회계 기간의 기초부터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전표 내역을 집계한 것이다.

제31조(월차 결산서의 공시) : 회계 담당자는 매월 단위로 재정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월차 결산서를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교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다.

제32조(계정별 원장 및 총계정 원장) :

- ① 회계 전표를 분개장에 이기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 후 매일 단위로 마감한다. 단, 회계 처리를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분개장 작성 절차와 총계정 원장에 이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각 계정의 일자별로 증가 및 감소를 기록하는 계정별 원장을 기록한다.

● 소규모의 교회에서는 매일 단위 마감이 아니라 매주 단위로

하여도 무방하다.

- ② 수작업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표 발생 이후의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재정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표 작성 이후의 중간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작성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계정과목) :

- ① 교회가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목표와 같다.
- ② 계정과목의 신설 또는 개폐의 경우 재정위원장의 발의로 제직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부채) : 장래의 지출이 확정되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한다.

제35조(잉여 차액의 처분) :

- ① 이월 경상수지 및 당기 경상수지 차액인 순자산 증가액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본금 전입 또는 특정 목적 적립금으로 처분한다.
- ② 이미 적립한 적립금 사용 때는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장 [특별회계]

제36조(관리 규정) : 특정 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는 관리·운영 규정을 재정위원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특별기금의 전용) :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특별회계 결산) :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하되, 일반회계와 통합해서 보고해야 한다.

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반드시 전체 회계에 통합되어 보고해야 한다.

6장 [재산 관리]

제39조(재산 명의자) : 교회의 등기·등록되는 모든 재산은 교인의 총유 재산으로 교회 명의로 한다. 단, 행정적 절차 미비로 인해 당회장(또는 재정위원장)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이를 교회 명의로 변경한다.

교단의 원칙에 따라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등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유지재단이 총괄적으로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40조(재산에 관한 결의) : 교회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내용 변경 등 중요 사항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재산 관리 대장) :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서 관리 대장을 작성한다.

- ① 중요 재산에 대하여서는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대장에 등재하고, 연 1회 이상 실사를 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 ② 재정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제42조(불용 처리) : 유형자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은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 7장 [세무]

제43조(고유 번호 등록) : 교회는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다.

- ① 교회는 교인들이 내는 현금에 대한 증여세와 교회가 취득하

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 등 세법 규정에 의해 혜택(권리)을 받으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바른 납세 문화 정착을 이루기 위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② 세법상 관리에 필요한 관리(세적 관리)번호가 고유 번호이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고유 번호를 발급받는다.

제44조(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교회는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또는 반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징수한 원천세액을 납부 및 신고한다.

제45조(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 교회는 매 분기(또는 반기)별로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를 반기별로 제출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단순한 협조 의무지만 상대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제46조(출연재산 보고) : 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결산기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한다.

교인들이 내는 현금에 대하여 중여세를 비과세하고,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반대급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8장 [감사]

제47조(목적) :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목적은 목회 계획과 예산 방침 및 승인받은 실행예산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결산서가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서, 교회 결산 정보 이용자에게 교회 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제48조(감사인의 적격성) :

- ①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이어야 하며, 재정 운용에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② 감사인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인 이하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①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감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공공예배에서 아무나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② 감사 선임 때 감사인의 독립성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안되는 경우 교단 소속 교회별로 상

호 교차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제49조(감사의 종류) : 감사는 회계 기간 중의 업무감사 및 결산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한 결산 감사 두 가지 종류 모두를 시행해야 한다.

- ❶ 업무감사는 일상적인 업무가 내부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다.
- ❷ 결산 감사는 연말 결산서가 사실과 부합되는 정보를 표시하는지, 표시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다.

제50조(감사 조서) : 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감사 업무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감사 조서'라고 하며, 감사 조서에는 사실에 대한 조사와 평가 및 개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제51조(감사 및 보고) :

- ① 감사인은 업무 흐름에 대한 감사와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감사 보고서로 만들어 책자로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하는 교인들이 향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❶ 감사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 결과 오류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 되도록 감사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❷ 감사인이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청한 후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교회 공동체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9장 [부칙]

본 시행규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4

## 교회 재정 운영 사례



사례 1

## 부천 예인교회

### 교회도 회사에서 배울 게 있다?

재정 사용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교회를 물색하던 중 부천 예인교회를 취재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정성규 담임목사에게 연락해 취재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정 목사의 반응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단 운영위원회에 얘기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운영위원장과 만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필요하면 만나는 걸로 하고….”

‘아니, 담임목사가 교회 재정을 잘 모른다면 누가 안다는 말이야.’ 나도 모르게 교회의 모든 상황은 담임목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목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한국교회 풍토에서는 이런 상식이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인교회는 정관에 의해 행정과 목회가 철저하게 분리된 교회다. 담임목사는 재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예인교회는 12년 전 한 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교인들

이 모여 만들었다. 담임목사의 전횡에 몸살을 앓았지만, 그 때문에 교인들은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교인들과 정성규 목사는 담임목사 한 명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교인 개개인과 소모임 하나하나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모습을 꿈꿨다. 재정도 이런 예인교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다.

####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비’, ‘판공비’는 없다

예인교회 교인들은 투명한 재정 운영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은 철저하게 예인교회 ‘규약’과 ‘재정 운영 기준’에 근거해 사용된다. 재정 운영 기준에는 회계 처리 방법, 재정 공개 방법 등이 나와 있다. 재정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다. 예인교회 홈페이지([www.yein.org](http://www.yein.org))에 가면 규약 및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볼 수 있다.

예인교회는 출석 교인 330명, 등록 교인 230명의 작은 교회다. 2013년 총 수입은 3억 5000만 원이었다. 교회는 설교나 광고로 현금을 독려하지 않지만, 교인들의 현금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수입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년도 지출을 참고해 지출 예산만 만든다. 각종 현금 명목으로 수입예산을 짜놓는 것이, 마치 얼마의 현금을 반드시 걷어야 한다는 목표처럼 느껴

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모자라지 않았다. 교회에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신앙고백이 더욱 선명해지는 이유다.

지출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여느 교회와 비슷하다. 각 사역팀 팀장과 팀원들이 전년도 지출을 고려해 예산안을 만든다. 실제로 예산안에 관여하는 인원은 팀당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5~6명 정도다. 사역팀들은 예산안을 세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곳으로 담임목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담임목사는 의결권이 없다). 운영위는 각 팀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검토하고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교인총회에 부친다. 교인들은 총회에서 그 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보고받고 승인한다.

예인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은 ‘先수령 後지출’이다. 예산안에 잡혀 있더라도, 일단 각 팀에서는 예산안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의 결재를 받으면 재정팀에서 각 팀에 예산을 입금한다.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모든 입금은 계좌 이체로 한다. 재정팀장은 매주 지출 내역과 통장 내역이 같은지 확인하고 통장에 직접 서명한다. 현금이 입출금되는 통장은 1개로 재정팀이 관리한다. 팀별로 재정 통장을 하나

씩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간단하게 보고하면 되지만, 수련회와 같은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행사를 치를 때에는 예산을 수령하기 전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따로 보고해야 한다. 각 사역팀은 예산을 수령하고 집행한 후 팀 단위에서 결산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결산서에는 집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정확하게 포함돼 있어야 한다. 예산이 남았으면 남은 금액을 결산보고와 함께 교회 재정 계좌에 입금하고, 예산이 모자랐으면 금액만큼 청구한다.

예인교회는 소그룹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교회에는 ‘아돌람’이라는 17개의 소모임이 있다. 아돌람은 매주 한 번씩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현금도 자체적으로 모은다. 아돌람 현금은 일단 교회 재정 계좌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돌람에서 현금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그대로 되돌려준다. 아돌람이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서게 하기 위해 재정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예인교회는 내부감사 제도를 두고 있다. 감사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하지만, 감사의 권한으로 중간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재정 감사는 특히나 꼼꼼하게 진행된다. 장부는 틀림이 없게 기록됐는지, 장부와 증빙이 정확한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교인들의 현금이 예인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재정이 쓰였는지와 같은 내용적인 부분도 감사한다. 감사 결과는 12월 교인 총회에 보고된다.

이렇게 한 해의 지출 결산과 감사 결과, 내년도 지출예산이 수립되면 교인 총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회는 매년 12월에 있는 예결 총회 1주 전에 보고서를 교인들에게 배부한다. 교인들이 교회의 사업과 재정을 미리 숙지하고 총회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교인이 예산안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전 교인의 의사를 수렴하려 노력한다. 예결 보고서에는 그 해 수입·지출 결산과 내년 지출예산, 각 팀별 지출예산 등이 모두 나와 있다.

계정 과목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증빙이 어려운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비’, ‘판공비’ 같은 계정은 없다. 많은 교회가 ‘도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목회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책을 사서 보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예인교회의 경우, 목사들의 도서비만큼은 후불제다. 도서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선지급하지 않고 구입 영수증을 받은 후 지급한다.

교인들은 교회 재정 현황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규

약과 재정 운영 기준에 따라, 재정팀은 매월 홈페이지에 재정을 공개한다. 예인교회 정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재정부에 질의할 수 있다. 재정 장부 열람 기준도 따로 있다. 정회원 2인 이상이 일주일 전 서면으로 요청하면 지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어디까지 보여 주느냐”는 질문에, 예인교회 재정 관리자는 지출 장부 원장과 영수증까지 꺼내 보이며 “세부 항목과 증빙(영수증)까지 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인교회는 지난 12년간의 재정 장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 ‘독립 사역’ 늘리려 허리띠 졸라매…, 교인들의 의식 함양도 지원

현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예인교회는 창립 때부터 재정 지출에 대한 원칙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외부로 쓰는 것이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칙은 변함없다. 어떤 규칙이나 비율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목회자와 교인들이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재정을 쓰다 보니 근 몇 년간 비슷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 재정의 30%는 목회비로 나간다. 목회비는 담임목사를 포함한 전임 목사 세 사람의 급여

와 성례비·성가대비로 이뤄져 있다. 30~40%는 내부 운영으로 쓴다. 일반 관리비와 행사비, 친교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30~40%는 ‘독립 사역비’로 쓴다. 독립 사역은 교회가 외부에 지출하는 것으로 ‘선교’, ‘나눔’, ‘대외 협력’ 세 가지로 나뉜다.

외부 사역을 ‘독립 사역’이라고 부르는 게 특이하다. 예인교회 홈페이지에는 독립 사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만인제사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 내 사역 중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역을 구분하여, 각 사역에 적합한 사역자를 임명하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전문 사역자로 활동하도록 돋는다.”

이에 따라 일반 교인들이 사역자가 되어 교회의 대외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재정 독립까지 염두에 두고 현금봉투에 각 독립 사역을 체크하는 란도 만들었지만, 아직 재정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독립 사역 중 ‘대외 협력’ 사역팀은 건강한 교회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단체를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일도 병행한다. 가령,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여는 교회 개혁 세미나를 교인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인교회가 9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이교다) 세미나도 대외 협력 사역의 일부다. 이교다 세

미나는 예인교회뿐 아니라 타 교회 교인들도 참석해, 교회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가 목회자 생활비에 많은 비율을 할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예인교회는 적지 않은 금액을 외부에 쏟고 있다. 하지만 예인교회는 ‘내부 운영은 최소화, 외부 사역은 최대화’라는 목표에 따라 독립 사역의 지출을 계속 늘리려 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독립 사역에 더 많은 비율을 쏟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복지와 노후 대책이 미흡한 예인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지출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독립 사역도 늘리고 목회자 복지도 높이려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내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인교회는 지금도 충분히 하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밥 먹는 것조차 까다롭다. 재정 운영 기준에는 “모든 부서 모임의 식사, 간식비 등은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예인교회는 주일 점심 때 문화센터에서 하는 급식을 먹는데 가격이 5500원이다. 이 중 교회가 1500원만 대고 나머지 4000원은 교인들이 낸다. 목회자의 식대도 한 끼당 6000원으로 계산한다.

예배 장소를 빌려 사용하는 것도 내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인교회는 주일마다 복사

골문화센터 회의실을 대여해 예배당으로 사용한다. 인원이 계속 많아지면 예배당을 하나 마련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인교회는 계속 분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역 문화센터를 적극 이용하자는 교인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 장부는 ‘수기’로… 교회 자산·부채 모두 공개

예인교회 재정팀은 팀장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재정 출납, 장부 기장, 장표 정리, 은행 계좌 관리 등을 총괄한다. 재정팀은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해 임명되고, 임기는 1년으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교회의 정회원으로 재무관리 경험이나 그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선출된다. 현재 재정 장부를 기록하는 강경애 권사는 회사에서 수년간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주일에 현금이 계수되면, 강 권사는 자산 부채장, 수입장, 지출장, 금전 출납부를 수기(手記)한다.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는 모든 작업을 전산화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 강 권사는 “회계 프로그램은 수정이 쉽고 수정해도 티가 안 난다. 하지만 수기는 수정하면 바로 티가 나 오히려 신뢰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가 작은 곳에서 굳이 따로 비용을 지출해 가며 프로그램을 써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교회가 지출한 금액은 매주 재정팀장과 운영위원장, 담임목사의 결재를 거친다.

예인교회는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매년 교인들에게 배부되는 예결 총회 보고서를 통해 현금 흐름뿐 아니라 교회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 교인들과 목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재정

규칙을 만들어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게 너무 빽빽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인교회 교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의식이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재정에 대해 훨씬 더 철저한 규정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요. 하나님께 드린 현금인데 그보다 못하게 운영한다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정팀은 예인교회의 재정 운영이 일반 기업의 재정 운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이렇게 재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데에는, 교인들의 의식은 물론 담임목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정재준 운영위원장은 말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게 한국교회의 정서인데, 오히려 정성규 목사가 교

회 재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목사는 강단에 서기 때문에 규정을 아무리 정해 놔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물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규 목사는 재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목회적으로 교인들의 현금 생활에는 관심이 많다. 현금을 규칙적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발성이다. 그런 면에서 정 목사는 교회가 오히려 현금 과잉이라고 얘기한다.

“한국교회는 현금의 종류도 금액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금은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현금을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는 게 교회가 할 일이죠.”

취재/글 \_ 구권효 기자



사례 2 **향상교회**

대형 교회도 ‘착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회 재정부에서 봉사하다가 담임목사나 장로가 부조리하게 교회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납득하지 못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건 기독교인이라면 한번쯤 들어 본 이야기다. 교회 재정 사용에 의구심이 든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재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대형 교회라면 더욱 그렇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놓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대형 교회가 가진 현실이다.

모든 큰 교회가 그렇지는 않다. 교회의 규모가 크면서도 건강한 재정 운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 향상교회(용인시 기흥구·김석홍 목사)는 시작부터 어느 대형 교회들과는 조금 달랐다. 서울 잠실중앙교회에서 시무하던 정주채 목사는 평소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많아져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주일예배 출석 교

인이 1500명을 넘으면 새로운 교회를 분립·개척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고 준비하던 중 시기가 찾아왔다. 정주채 목사는 2000년 10월 담임목사직을 사퇴하고, 장로 7명, 성인 약 200여 명과 함께 용인에 향상교회를 개척했다.

향상교회 설립자인 정주채 목사는 평소 ‘건강한 재정이 건강한 교회의 밑거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정 목사의 재정 운영 철학에 많은 교인들도 공감했다. 2013년 정주채 목사가 65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하며 교회를 떠난 후에도 재정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교인들과 교회 시작부터 함께 노력한 덕분이다. 교회는 정 목사의 후임으로 김석홍 목사를 지명했다. 김 목사는 8년 동안 향상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해 왔기에, 정주채 목사가 세운 원칙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원하고 있다.

#### 예산편성 전담 기구 ‘예결산위원회’

1년에 42억 원이나 되는 향상교회의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 편성될까. 향상교회 정관을 보면 예산편성 절차가 잘 설명되어 있다.

정관 5장 재정

제21조(예산과 결산) :

- 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

지로 한다.

- 예산 확정을 위하여 당회는 매년 9월 말까지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당임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산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초안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한다.
- 결산서는 재정부가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와 운영 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감사 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제직회에 부의하고, 공동의회가 최종 인준한다.

정관 21조 2항에서 말하는 예산위원회는 ‘예결산위원회’라고 불린다. 이 예결산위원회는 향상교회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예결산위원회는 9월 중순 당회의 임명으로 구성된다. 장로 3인, 신교부 대표 1인, 쉐마교육위원회(교육부) 대표 1인, 권사회 대표 2인, 재정부장 1인, 회계집사 1인 등 총 9명이다. 많은 교회들이 모든 시무 장로를 예산편성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과 다르게 향상교회는 3명만 포함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부서를 맡고 있는 안수집사·권사 등이다.

이 단계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예결산위원회는 세부 예산 지침서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 이 지침서는 담임목사가 다음해 목회 방침과 교회 비전을 고려해 작성하면 당회에서 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결산위원회가 한 해 교회 예산편성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만, 이들이 각 부서의 세부 예산까지 짜는 것은 아니다. 부서 예산은 각 부서의 장과 회계가 세부 예산 지침서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1차적으로 작성된 부서 예산안의 타당성을 예결산위원회가 검토한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지만 때로는 한 부서의 예산을 감축해야 할 때도 있고 증가시켜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위원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오가기도 한다. 위원회가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만큼,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이 감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토요일과 주일은 물론이고, 때로는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 장시간 회의하며 다음해 교회 살림을 꾸린다.

예결산위원회가 예산편성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거쳐야 할 절차는 많이 남아있다.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완성된 예산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들을 모아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승인이 나면 후에 차례대로 운영위원회, 당회, 항존직 제직회를 거쳐 12월 첫 주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한다. 여러 번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할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담임목사는 예산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각

부서의 예산 집행을 재정부장 선에서 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집행은 1차적으로 각 부서의 회계가 맡는다. 각 부서에서 작성한 항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가부장을 거쳐 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재정부는 예산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 부서에게 할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당회장의 결재가 없이 재정부장이 전결한다.

### 정기적인 결산보고와 감사가 더욱 투명한 재정 아끌어

일부 대형 교회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절차가 잘 갖춰진 덕에 맡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에 맞춰 잘 돌아간 것이다. 향상교회도 얼핏 보면 그와 같다. 하지만 향상교회가 다른 대형 교회와 다른 점은 재정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는가 하는 점이다. 향상교회는 교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드린 현금을 바로 사용하자는 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다. 따라서 교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교인들에게 보고했고, 교인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다.

재정 보고는 정기 보고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두 달에 한번 제직회를 열어 두 달 동안의 모든 재정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항목별로 잘 정리된 재정 보고서를 인쇄해 참

석한 모두에게 배부한다.

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배부된 보고서를 걷어가거나 하지 않는다. 한 번 나누어 주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회수해 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숨길 것이 없는데 다시 걷어가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제직회가 두 달에 한 번 보고를 받는다면 그 사이에는 재정 보고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제직회에 보고한 다음 달에는 각 부서장들의 모임인 운영위원회에 재정 보고를 한다. 제직회에 두 달 동안의 결산을 보고하면 운영위원회에는 제직회 후 한 달 동안의 결산 내용을 보고한다.

재정 보고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향상교회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 정관 제6장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향상교회는 외부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외부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감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회계 전문가와 6인 이내의 인원을 당회가 임명한다. 이것도 대부분의 직책과 마찬가지로 1년 임기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각 부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구성된 감사

위원회가 일 년에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에 정기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위원회는 교회의 재정이 예산대로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과, 각 부서·위원회·기관의 예산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 결과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당회의 결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감사 결과는 연말 진행하는 결산보고와 동시에 이뤄진다.

### 교역자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하는 재정 장부

향상교회는 회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2004년부터 ‘웹교회관리시스템’이라는 교회 관리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재정 장부를 전산화했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은 저장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향상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교회 재정 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언제든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재정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재정부장, 회계집사, 사무장, 사무간사 이렇게 4명뿐이다. 담임목사나 부교역자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교인들의 현금 내역이나 부서별 재정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재정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하다. 향상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 아무개 집사가 2008년 한 해 동안 해외 선교비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교회 사무실에 가서 요청하면 된다. 본인이 한 현금 내역이나 교회 재정 사용 내역 등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다른 교인이 현금한 내역 까지 뽑아달라는 무리한 부탁만 아니라면 괜찮다.

### 예산 30%, 선교·구제비로 다시 이웃에게

향상교회의 한 해 예산에서 눈여겨 볼 점은 선교·구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향상교회는 1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선교·구제비로 사용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향상교회의 모토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받은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도 때문이다. 1년 예산이 약 42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선교·구제비로만 1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선교·구제비는 국내·국외 선교부와 긴급구호부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긴급구호부는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과 결손 가정 중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부서다. 향상교회가 한 해 동안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만 해도 총 68명에 달하고 긴급구호부의 도움을 받는 집도 53곳이다. 많은 곳에 예산

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사람일이란 것이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 있는 파송 선교사가 갑자기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긴급 구호로 도움을 주고 있던 가정이 집세가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원래 예산에 없던 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은 전담 기구가 대외협력사업위원회다.

대외협력사업위원회에는 국내전도부장, 해외선교부장, 긴급구호부장, 재정부장이 당연히 참여하며 그 외 5명을 당회가 지명하여 조직한다. 각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안건이 올라오면 이들이 심사하여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혹자는 구제하는 데 뭘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향상교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교회인 만큼 오히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부서가 바로 지불한다. 그러나 5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대외협력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가 끝나고 지불이 결정되면 해외일 경우 해외선교부가, 국내일 경우엔 국내선교부 등 해당하는 부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지출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회 예산의 4%를 차지하는 예비비에서 지급하는데 이 경우 꼭 제직회의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교·구제비가 지급되는 방법은 명확하다. 교회는 받을 사람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다. 정기적으로 구제비를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를 택하기도 한다. 향상교회에서 특이한 점은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선교 활동비라는 것으로 한 해 1000만 원을 책정했다는 점이다. 얼핏 들으면 무슨 용도로 쓰는 항목인지 불분명하다. 혹은 목회 활동비는 아닌지 착각하기 쉽다. 사실 이 항목은 향상교회가 이사를 맡고 있는 선교 단체들의 회비 또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 방문을 위해 떠나는 담임 목사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다. 물론 모든 지출은 재정부의 결재를 거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용처를 명확하게 한다.

### 부채 상환 노력과 함께 목회자 납세 실천

향상교회는 목사들의 납세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정주 채 원로목사는 평소 “사례가 소득이 아니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현재 향상교회 모든 교역자와 교직원은 소득을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목회자 납세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목사들은 강제적인 목회자 납세에는 반대하고, 자발적인 납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 대응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향상교회는 재정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는 신

념으로 납세를 실천하고 있다.

###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된다.

모범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고 자부하는 향상교회지만, 부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주채 원로목사는 용인향상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인 수가 2000명이 넘으면 무조건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교회 정관에 명문화했다. 향상교회는 2011년, 정관대로 사역하던 목사 2명과 장로 2명, 교인 170명을 분립해 흥덕향상교회를 개척했다. 흥덕향상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을 지원했는데, 향상교회의 현 부채는 대부분 이때 생긴 것이다. 향상교회는 예산안에 특별 지출 항목을 편성해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력이 풍부한 대형 교회의 장점을 최대 활용

향상교회의 재정부장과 재정부원들은 대부분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꼭 금융권에 종사하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최대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교회는 자칫 전문 지식이 있는 일부만 교회 재정 운용에 관심을 가질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가고 있다. 교인들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초부터 내년

도 예산과 관련된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린다.

교회 초창기부터 투명한 재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정주채 목사의 확고한 철학에 교인들이 뜻을 모으면서 지금의 향상교회가 가능하게 됐다. 취재를 하면서 향상교회 관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당연하죠”였다. 다른 곳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향상교회 교인들은 웃으며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취재/글\_이은혜 기자

사례 3  
새길교회



교인들은 현금을 내기만  
하지 않는다

교회 분쟁 사례를 취재하다보면 목사나 장로들의 부정과 비리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모든 목사나 장로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일부 목사나 장로들이 문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운다. 교회 재정을 유용하거나 교회를 개인의 사업처럼 주무른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권한이 집중되는 제도를 문제로 여겼다. 그래서 당회장과 당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주요 임직자에게 임기를 부여하는 등 실험적인 제도를 가졌다.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교회도 그러한 예 중 하나다. 새길교회도 비슷한 취지로 설립된 평신도 교회다.

“우리는 섬김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직업화된 교역자 중심의 교회에서 공동체적 평신도 중심 교회로,

제도와 율법주의에 매인 교회에서 은총과 자유의 교회로,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교회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위 글은 1987년 작성된 새길교회 창립 취지문이다. 30년 전에 작성된 글인데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창립 취지문에 나와 있듯이 새길교회는 목사가 없다. 직업화된 교역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공동체적 평신도 중심 교회를 목표로 한다. 목회자의 빈자리에는 교인들이 자리한다. 설교·목양·행정·상담·운영 등 모두 교인들의 몫이다. 교인들 중에는 신학자도 있고, 교사·공무원·직장인·주부·학생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혹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역에 참여한다.

### 30년 넘게 지켜온 가치, “재정의 60%는 남을 위해”

평신도 교회 새길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지켜온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 “섬김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길교회는 교회 예산의 60%를 남을 위해 사용한다. 이는 정관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라 선교, 봉사에 힘쓰는 교회로서 교회 예산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교회 밖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사용한다.” (새길교회 정관 3조)

홈페이지에 있는 연혁을 1987년까지 따라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1987년 4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소 마련을 위한 약정 현금과 교회 재정의 60%를 봉사와 선교 부문에 각각 반씩 사용키로 결의하다.”

그렇다면 새길교회는 정말 정관을 지켜 오고 있을까. 작년과 올해 예산안을 보면, 실제로 한 해 예산의 60% 이상을 봉사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다. 2013년 봉사부와 선교부 예산 비중은 각각 15%, 45%이고, 2014년은 11%, 51%이다. 신상화 재정부장은 교회가 매년 재정의 60%를 봉사부와 선교부에 배정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의 의지가 계속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길교회의 예산편성 과정은 어느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먼저, 10월 중순이 되면 재정부장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을 받는다. 이를 종합한 재정부장은 다음해 교회 예산안을 작성해 11월 운영위원회에 1차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일반 교회의 당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40여 명의 평신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운영위원이라고 불리며, 교회 대소사를 논의한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밑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는 각 부서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

신들이 신청한 부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재정부장의 보고로 확인하고, 예산을 더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논의를 한다. 봉사부와 선교부의 예산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원칙 아래. 이렇게 몇 차례 수정을 거치고 난 예산안은 공동의회로 상정된다.

공동의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에 열린다. 교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를 출력해 전 교인에게 배포하고, 사전에 예산안을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미리 보고 회의에 참석하게끔 한다. 작은 글씨로 작성된 예산안을 스크린에다 띄운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하는 것과는 다른 풍경이다.

재정부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김희국 운영위원장은 아쉽게도 교인들이 예산안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산 규모가 큰 편도 아니고, 40여 명의 운영위원들이 수차례 검토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몇몇 교인은 매년 의견을 제기한다. 신상화 재정부장은, 간혹 선교비와 봉사비가 지난해보다 감소하면 이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 신 부장은 해마다 선교부와 봉사부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청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고 했다.

공동의회 때는 지난해 결산도 다루는데, 결산 보고서에

는 교회 재산 현황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 교회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을 모두 알 수 있다.

### 꼼꼼함과 전문성으로 사고 방지

재정부는 이외에도 매달 둘째 주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월간 재정 보고를 한다. 이때 운영위원에게 월간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에는 당월 수입, 지출, 누계가 각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재산 증감 현황도 나와 있다. 지난해 이월금과 올해 증가액(누적 수입과 누적 지출을 합산한 금액)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월간 재정 보고서는 모든 교인에게도 공개된다. 이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전 교인이 매달 교회의 재정 운용 현황을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까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재정 보고는 교회가 재정 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재정부장은 월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정부가 보유한 현금 장부와 재정 장부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유한 수령증 등을 서로 대조한다. 이때 기록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재정부장은 대개 금융계나 회계법인 등 관련 분야에서 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전문성을 위해서다. 현재 새길 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국 위원장은 45년간 은행에서 근무를 해 온 전문가다. 그는 올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원래 재정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더러 있다. 현재 재정부장은 역사학자 출신이다. 교회가 작기도 하고, 모든 직분이 임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금융권 출신이 부장이 될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에는 현 재정부장처럼, 십 수 년 동안 재정부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쌓은 이를 부장으로 삼는다.

새길교회는 감사위원으로 2명을 선출하는데 이 역시 회계 전문가 또는 금융기관 경력자 중에서 선출한다. 올해 감사위원 중 한 사람은 현직 회계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금융권 출신이다. 감사는 일 년에 두 차례 진행한다. 7월에는 전반기, 1월에는 하반기 재정 운용 실태를 감사한다. 이들은 예금통장, 교회 장부, 월간 보고서 등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감사 중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 열린 기독교 문화를 추구하는 교회

새길교회는 한국교회 간신과 열린 기독교 문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1월 새길기독사회문화원(정경일 원장)을 창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선교부, 봉사부 예산에 절반 가까이가 문화원 운영비에 쓰인다. 새길기독사회문화원은

정기적으로 ‘종교문화포럼’, ‘신학아카데미’, ‘일요신학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기독교 영성과 신학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선근 선임연구원(새길기독사회문화원)은 문화원 강좌와 포럼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한다고 말한다. 일반인들도 기독교와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는 것, 이것이 새길기독사회문화원이 추구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문화원은 온라인 방송, 출판, 소모임 운영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에서 새길교회는 연간 재정의 60%를 선교부와 봉사부에 배정한다고 말했다. 이중 절반은 문화원에 진행하는 강좌, 포럼, 출판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외부 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새길교회 선교부는 18개 단체, 봉사부는 13개 단체를 매달 10~20 십만 원씩 지원했다. 각 단체들은 대다수 어려운 이웃을 돋는 비영리단체와 선교 단체,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다.

약 3억도 안 되는 교회의 연간 예산으로 새길교회가 이렇게 여러 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교회와 달리 크게 재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와 같은 교역자를 두지 않아 목회자 사례비나 교통비, 특별 활동비, 사택비 등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이 없으니 다른 교회와 같이 대출금을 갚는데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다. 매주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강남청 소년수련관도 대관료도 연간 1600만 원으로 다른 상가 건물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교회는 아낄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아낀다. 새길교회는 ‘공동식탁의 사귐’이라고 해서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교인이 강남청소년수련관 지하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다. 200여 명의 교인이 한 주에 한 번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50만 원도 채 안 든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면 대개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으로 점심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약된 돈은 돈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새길교회에는 특별한 현금 제도가 있다.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지정해서 내는 현금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을 ‘까마귀 현금’, ‘바나바 현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새길교회는 ‘원손 모르게’라고 말한다. 현금 봉투 곁에 돋고 싶은 단체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기명하고 현금함에 넣으면, 새길교회 서로돌봄위원회는 해당 인물(혹은 단체)에 전네준다.

### 평신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평신도 열린 공동체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와 봉사

에’ 등 87년 창립된 새길교회의 비전은 오늘날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대개 교회가 특별한 비전을 갖고 시작해도 중간에 담임목사가 교체되면서 교회 사역 방향도 달라지기도 하는데, 새길교회는 다르다. 오히려 창립 초기에 가졌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 오고 있었다. 한때 교역자(담임목사가 아닌)를 세웠다가 지금은 두지 않는 것도 평신도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새길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뜻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평신도들이 함께 교회의 비전을 세워 왔기 때문이다.

물론 200여 명의 평신도들이 모두 모여 한 마디씩만 해도,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24명과 직분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직분상 운영위원에는 신학위원·전임 운영위원장·새길기독사회문화원 이사장과 원장·신학연구원·구역장·남선교회장·여선교회장·청년회장이 있다.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해 통상 2년마다 교체되는 꼴이다. 다른 위원장과 부서장도 운영위원장과 임기가 같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직분에 임기를 두는 이유는 특정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원탁회의와도 같다. 40여 명의 운영위원들이 교회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한다. 교인들은 집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이 없어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른다. 그러나 보니 교회 분위기가 수직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 누구나 공동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한 가지 의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이 있다면, 공동체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목사 한 사람이나 소수의 장로들이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수평적이고 자유롭기에,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비전을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건강한 교회 재정을 낳는 비결이기도 하다. 교회 재정은 교회의 비전과 결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온 교회가 선교와 봉사에 힘쓰기로 마음을 모았으니, 예산의 절반 이상이 외부 사역에 쓰여도 잡음이 일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투거나 큰소리를 내는 일도 없다.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 재정을 선교와 봉사에 더 쓰라고 말할 정도이다.

평신도 공동체 새길교회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 교회에서도 충분히 새길교회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정부와 당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위원회와 부서

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예산안을 사전에 숙지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예산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한다면, 담임목사나 소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된다면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건강한 재정 운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취재/글 박요셉 기자



#### 사례 4 새맘교회

### 현금은 교회 개혁을 위한 도구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 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복 신앙, 율법주의적인 죽은 믿음, 사회적 책임의 방기, 교회 내 다양한 차별, 성장주의,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 불투명하고 이기적인 재정 운영과 비리 등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패에 동참해 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지만 쉼 없는 노력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맘교회(박득훈 목사) 정관 첫머리에 나와 있는 교회 전문이다. 전문을 통해 드러나듯 새맘교회는 ‘교회 개혁’을 지향하는 공동체다. 새맘교회의 이러한 정체성은 교회 창립 배경과 연결된다.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 방식, 특히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회의 일방적인 교회 운영에 회의를 느낀

20여 명의 교인이 중심이 돼 새맘교회를 창립했다.

‘평교인’ 중심의 민주적 교회. 교회를 설립할 당시 새맘교회 교인들이 품었던 꿈이다. 담임목사가 중심이 된 교회, 장로 몇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교인들은 6개월간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쳤다.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 등 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2010년 9월 장충동 함께여는빌딩에서 창립 예배를 갖고, 2011년 1월에는 박득훈 목사를 담임목사로 초빙했다.

‘일인 독재’ 체제의 교회 운영은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져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됐다. 새맘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맘교회의 운영 주체는 당회가 아닌 평교인 중심의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가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한다. 그렇다고 담임목사가 교회 행정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새맘교회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진다. 운영위원회는 각 부 부장 6명, 담임목사 1명, 운영위원장 1명, 장로 1명, 여성 대표 1명, 구역장 대표 1명, 청년 대표 1명을 합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담임목사는 다른 운영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첫째 주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

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담임목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담임목사가 제시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운영위원회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와 교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운영위원장과 담임목사의 역할은 정관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교회의 방향 설정 및 운영 전반은 운영위원회에서, 교회의 목회 활동(설교, 교육, 심방, 성례전)은 담임목사가 책임진다. 하지만 목회와 교회 운영이 무 자르듯 갈릴 수는 없다. 새맘교회는 예산편성과 집행, 교회 방향 설정 과정에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충실히 반영한다.

2013년 박득훈 목사가 설정한 목회 방향은 ‘모든 교우가 새 포도주를 만끽하는 교회’, ‘새 포도주를 세상에 부어 주는 교회’였다. 이를 위해 주일예배 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교육부 예산을 증편했다. 사회복지부 예산 역시 목회 철학에 맞춰 소폭 수정됐다. 재정 지원 중심이었던 사회 선교비는 교인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봉사할 수 있게끔 교통비와 활동비를 늘렸다.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방향이 재정 운영에 반영된 것이다.

##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어… 예산편성 과정에 전교인 참여

예산편성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다. 11월 첫째 주 인사 총회에서 각 부서 부장을 비롯한 임원이 선출되면 한 달간 인수인계에 돌입한다. 인수인계를 마친 12월 첫째 주부터 각 부부장과 부서원들은 해당 부서의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한다. 각 부서는 부서 평가와 다음해 예산 계획안을 12월 말까지 예산편성 TFT(Task Force Team)에 제출해야 한다.

새맘교회는 12월 첫째 주부터 1월에 셋째 주에 열리는 교인 총회 전까지 예산편성 TFT를 운영한다. TFT는 새롭게 선출된 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5명의 교우를 직접 선택해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와 예산편성 TFT는 분리해 운영한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TFT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예산편성에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게 했다.

TFT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조정해 최종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 정리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 넘겨 1차 심의를 받는다.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예산 계획안은, 신년 1월에 열리는 교인 총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10년 교회 창립 이후 4번의 교인 총회가 있었다. 하지만 교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예산안이 표류한 경우는

없었다. 교인들이 교회 재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교인 대다수가 6개 부서에 부원으로 소속돼 있다. 교인들은 교인 총회 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 부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더라도 TFT에서 1차 조율에 나선다. TFT에서 상정한 예산안은 각 부부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심의를 거친다. 예산안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교인 총회에 상정된다. 교인 총회에서 큰 의견 차 없이 예산 편성 계획이 통과될 수 있는 이유다.

새맘교회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예산 계획안에 수입 목표를 작성하지 않는 점이다. 대신, 전년도 수입 규모를 고려해 이듬해 예산의 증액 수준을 결정한다.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원희 운영위원장은, 신앙고백의 표현인 현금이 부담이나 하나의 목표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

#### 신뢰보다는 원칙… 감사는 교인 투표로 선출

새맘교회의 재정 관리는 사무관리부에서 담당한다. 사무 관리부는 부장 한 명과 세 명의 부원으로 구성된다. 사무 관리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 사무관리부장과 회계는 주일예배 후 당일 현금을 계수한 뒤 교회 통장에 입금한다.
- 전산(EXCEL) 파일로 현금별 수입 내역 작성, 각 부서별

지출 내용을 정리한다.

사무관리부장은 별도로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를 지정해 운영한다. 회계의 임기는 2년이며 현재 새맘교회 회계는 NGO 단체에서 회계 간사로 일하고 있는 교인이다.

새맘교회는 선 수령 후 지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지출 결의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지출 승인은 운영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사무관리부장의 몫이다. 사무관리부장은 지출 결의서를 검토한 뒤, 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의서에 쓰인 계좌로 지출 금액을 입금 한다. 재정을 집행한 교인은 영수증을 사무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이 남았다면 남은 금액을 사무관리부에 보고한 뒤 교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영수증 보관 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교회가 창립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쓰인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새맘교회의 모든 회계는 단일 은행 계좌로 운영해 입·출금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보조 통장의 개설은 금하고 있다. 새맘교회가 운영하는 통장은 총 세 개다. 새맘공동기금을 관리하는 통장과 지정 후원 현금을 관리하는 통장, 마지막으로 일반 경비 통장이다. 현금 수입, 각 부서별 운영비, 예배실 임차료, 목사 사례비 등은 모두 경비 통장을 통해 입·출금된다.

## 감사는 까다롭게, 재정 장부 열람은 수월하게

감사는 까다롭게 진행한다. 새맘교회는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무 감사와 회계 감사를 따로 두고 있다. 감사 위원은 새로운 임원단을 구성하는 11월에 선출한다. 교인들의 추천을 통해 감사위원 후보를 받는다. 후보가 선정되면 인사 총회를 통해 최종 2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필요에 따라 감사 보조원을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새맘교회 감사위원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회계 전문가들이다.

감사위원은 12월 한 달간 감사에 착수한다. 사무 감사는 교회 비품을, 회계 감사는 교회 재정을 맡는다. 감사 위원이 임명되면 누구도 감사의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운영위원장이 교인들에게 감사 기간을 공고하면, 운영위원회 및 모든 부서는 감사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회 재정 서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재물 대장, 부서별 활동 자료 등이 포함된다. 감사위원은 1월 셋째 주에 열리는 교인총회 때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운영위원장은 월 말, 주일예배 광고 시간을 이용해 재정 수입 및 집행 결과를 교인들에게 보고한다. 세부 지출 내용은 교회 카페에 게시하지만, 교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세부 지출 내역까지 설명한다. 외부인들 역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산 내역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인의 개별 현금 내역은 사무관리부장만이 보관할 수 있다. 감사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 할 수 없게 해 교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재정 장부는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수입의 경우 현금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나누었다. 현금 수입은 다시 온라인 기명 현금, 주일 기명 현금, 지정 현금 등으로 세분화 했다. 지출 내용은 각 부서별로 분류한다. 예배부·선교부·사회복지부·교육부·사무관리부·친교부 별로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기록한다. 사무관리부의 경우 예배실 임차료, 목사 사례비, 관리비 등으로 구분해 월별 지출 금액 모두를 반영한다. 또 예산 계획에 따라 지출이 바로 되고 있는지, 지출이 초과했다면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있도록 연간 예산 대비 집행 비율을 산출해 보고 한다.

새맘교회는 단식부기로 회계 장부를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뿐 아니라 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록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맘교회 역시 2011년 감사에서 복식부기를 시행 하자는 감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할 만한 적정 교인을 찾지 못했고, 수입·지출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복식부기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현직 회계사 교인의 조언에

따라 현재까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감사는 까다롭지만 재정 장부 열람은 수월하다. 교인 한 명이라도 재정 장부 열람을 요청한다면, 사무관리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지출 증빙서와 영수증을 포함한 세부 항목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새맘교회는 이와 같은 원칙을 정관에 명시했다.

### 재정, 적지만 알뜰하게… 교회 개혁 위해 내부 지출 최소화

새맘교회는 재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재정의 30% 이상을 나눔 및 사회 선교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새맘교회의 연 예산은 1억 5000만 원가량이다. 교역자 사례비와 예배당 임대료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새맘교회의 사정상 교회 내부 운영비로 쓰이는 재정은 전체 예산의 1500만 원(10%)남짓이다. 2014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배부에서 516만 원, 교육부에서 293만 원, 친교부에서 429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교회 재정을 공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내부 지출을 최소화했다.

알뜰살뜰 아낀 재정은 교회 개혁을 위해 쓰인다. 새맘교회는 ‘한국교회의 개혁’이라는 새맘교회 설립 취지에 따

라,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연간 1100만 원가량을 후원한다. 정기 후원하는 단체는 느헤미야기독연구원·기독청년아카데미·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평화누리·교회개혁실천연대·〈복음과상황〉·성서한국·희년 함께·〈뉴스앤조이〉 등이다. 후원만 하는 건 아니다. 새맘교회 선교부는 매년 초 후원 단체의 활동 내용 및 결산 내역을 조사해 후원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한다.

교회 바깥에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니다. 새맘교회는 ‘새맘 공동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새맘 공동기금은 어려움에 부닥친 교인들을 위한 기금이다. 재정 도움이 필요한 교인 혹은 주위 교우가 해당 교인의 계좌번호를 현금함에 넣어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기금 요청이 들어오면 새맘교회 사무관리부장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4회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어려움에 닥친 교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기금이다. 새맘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해 새맘공동기금의 예산이 다른 지출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했다.

새맘교회는 교회 소유의 예배당을 갖지 않고 있다. 서울 시 영등포구에 있는 세계청소년NGO교육문화원을 임대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새맘교회 정관 39조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교인들은 교회 갈등의 상당 부분이 교회 재산과 관련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교회 설립 당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예배당 소유 금지 원칙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건물 임대료로 쓰이는 단점 역시 안고 있다. 새맘교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배당을 구입하되, 최대한 사회적 용도로 예배당을 공유하는 방식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목회자 납세는 개신교 정신

새맘교회 교역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자발적 납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 역시 세금으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고 있기에, 한 명의 시민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성직과 일반 직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개신교 정신이므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건 신학적으로도 옳은 일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현금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 편이 아니다. 대신, 기독교인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야 하는지 교인들에게 교육한다. 박 목사는 현금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건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신앙고백이라고 했다. 그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물질관이자 현금의 의미라고 말했다.

“현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자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축복의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새맘교회 교인들의 말이다. 새맘교회 교인들에게 현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다. 면 길이지만, 박득훈 목사를 비롯한 새맘교회 교인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본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이어 가 ‘교회 개혁’이라는 꿈을 이뤄 내길 바란다.

취재/글 \_ 장성현 기자



## 사례 5

### 나눔과섬김교회

#### ‘교회는 공적 기관’이라는 인식, 재정 투명성을 부르다

광주 나눔과섬김교회 조인선 목사(61)는 자비량 목회를 한다. 주중에는 전남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설교와 심방을 한다. 지난 2003년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까지,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역임하며 수십 년간 봉사했다. 하지만 좋은 기억은 많지 않다. 다녔던 교회마다 크고 작은 분란을 겪었다. 문제는 대부분 목사에게 있었다. 하나같이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 그럴 때마다 조 목사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고심 끝에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넣었다. 역사, 문화, 철학 등을 다루는 신학은 ‘죽은 숫자’를 연구하는 회계학과 차원이 달랐다. 재미와 감동, 때로는 경외감을 느꼈다. 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지난 2007년 2월 조 목사는 네 가정, 전남대 제자들과

함께 나눔과섬김교회(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23-4)를 세웠다. 개척과 동시에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교인들과 이를 지켜나가자고 다짐했다. 하나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교회 재정의 절반을 선교·구제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 자비량 목회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 가고 있다. 교인들은 도서비와 유류비라도 쟁겨 주고 싶은 마음이 크나, 조 목사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고사한다. 예산의 절반은 선교·구제비로 쓰려고 노력한다. 이 목표는 이룰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2013년에는 재정의 33%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다. 2014년 예산은 8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 4600여만 원을 선교·구제비로 사용했다.

#### 선교 사업 차질 없게 예산편성

나눔과섬김교회는 매년 12월 예산안을 편성한다. 같은 달 마지막 주 열리는 제직회 심의를 거쳐, 새해 1월 첫째 주 공동의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산편성 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는 재정부장과 각 부서장인 집사, 권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예산편성에 앞서 2~3주 동안 기간을 정해 교인들로부터 예산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새해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수입액 보

다 높게 책정하기 마련이다. 교인이 늘고 현금 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나눔과섬김교회는 전년도 수입 금액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으면 선교·구제비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에게 현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다. 만일 상반기 실제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7월 초 공동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나눔과섬김교회의 예산 항목은 선교·구제비, 관리비, 예배비, 교육비 등 네 가지다. 부서가 선교·구제부, 관리부, 예배부, 교육부로 구성돼 있어 항목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항목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책정하는 항목은 선교·구제비다. “선교와 구제비를 50% 이상으로 한다”는 교회 정관에 따라 선교·구제비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예산을 심의한다. 선교비는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들과 북한 선교 단체 등에 지원한다. 구제비는 국내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을 돌보는 데 사용한다.

남은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관리비다. 전체 예산의 약 28%를 차지한다. 나눔과섬김교회는 현재

건물 두 개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총 당 약 60평 정도 하며,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예배부(7.9%)와 교육부(9.6%)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 서운한 법도 한데 군소리 한 번 내지 않는다. 교인들은 예산의 절반을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 재정 관리, 교인들 손으로 직접

담임목사 결재 없이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여느 교회와 달리, 나눔과섬김교회는 담임목사가 재정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예산은 교인들이 직접 승인하고 집행한다. 담임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예산의 사용처를 논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정부장이 제직회에서 하는 재정 보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조인선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목사가 ‘교회 현금을 이용해 사리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급하면 재정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사용하고 곧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라면서 쓸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유용에서 횡령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목회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산 집행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담당자가 직접 기안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뤄진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해당 교사가 예산 청구서를 기안하고, 교육부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재정부장은 예산서에 의거한 지출인지 확인한 뒤 금액을 지출한다. 상황에 따라 선지출, 후 결제도 한다.

재정 입출 내역은 재정부장이 직접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교회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교·구제비의 영수증은 송금 내역 문서로 대체한다. 지출 결의서와 송금 내역 문서는 회계장부에 첨부하며, 간이 영수증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공동의회록에 첨부하며 파일로 따로 보관한다.

그동안 재정 자료는 재정부장이 관리해 왔는데, 최근 들어 교회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에 보관한다. 장부 보존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교회 역사를 남기는 차원에서 계속 보존할 방침이다. 장부는 나눔과섬김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이는 정관에도 명시하고 있다.

예산 결산보고는 매월 첫 주 제직회에서 한다. 결산 내역은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나눔과섬김교회는 매월 교회 홈페이지([www.cnuchurch.or.kr](http://www.cnuchurch.or.kr))에 결산서를 공개하는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 모임은 좋은 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설 단체라면 모르지만, 교회는 사설 단체가 아닌 공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나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과 승인뿐만 아니라 재정 감사도 교인 몫이다. 감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장로 1명과 안수집사 또는 권사 1명이 맡는다. 되도록 회계 전문 지식을 가진 교인을 뽑는데, 만일 전문가가 아닐 경우 교회에 출석하는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얻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는 분기별로 1년에 네 차례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교회 예산 규모가 작아도, 지적 사항은 나오게 마련이다. 재정부장 김덕용 집사는 중빙서류가 없거나, 통장과 자금 출납부의 금액이 맞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통장 자체 수수료 내역까지 따로 표기할 정도로 세세하게 관리한다. 김 집사는 “감사뿐만 아니라 제직회에서도 재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 1원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눔과섬김교회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대신 2014년 초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 시스템’에 재정을 공시했다. 자산 총액 1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과세기

간이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 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돼 있다. 종교법인은 제외하고 있는데, 나눔과섬김교회는 재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2013년 결산 서류를 공시했다. 조 목사는 앞으로 더 철저히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고 방지 마련 회계 업무 세분화

재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부장을 포함한 교인 세 명이 회계 업무를 맡는다. 재정부장과 회계 집사는 당회 추천과 제직회 승인을 거쳐 뽑는다. 세입 기장과 세출은 회계 집사 2명이 맡고, 장부 정리는 재정부장이 담당한다. 이들은 주일예배가 끝나면 함께 현금을 계수하고, 재정부장은 월요일 오전까지 교회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철두철미한 재정 관리가 자칫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 목사는 인근 교회 소속 재정 담당자가 수년간 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재정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내부 통제 제도를 확립하지 않고, 회계 담당자들의 믿음과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자가 경제적으로 급한 경우 유용과 횡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교인들은 현금

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3인의 회계 담당자 중 적어도 한 명은 금융,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려고 한다. 가령, 전 재정부장은 세무 공무원이었고, 현 재정부장은 금융기관 사원으로 있다. 이렇다 보니 나눔과섬김교회는 회계와 관련한 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교회도 복식부기를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나눔과섬김교회는 평소 단식부기로 기장을 하지만, 결산 때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조 목사는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빚이 없기 때문에 단식부기를 하든 복식부기를 하든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 ‘빚’도 ‘십일조’도 없는 교회

일부 교회는 막연한 부흥을 기대한 채 예배당을 건축했다가 빚더미에 놓았는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부채 이자에 허덕이는 교회도 있다. 이런 교회들과 달리 나눔과섬김교회에는 ‘빚’이 없다. 아예 교회 정관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차입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조 목사는 빚을 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하

루는 교인들이 매달 내는 임대료가 아깝다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구입하자고 제안했다. 은행에 내는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조 목사는 어찌 한 경우에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생각하면서 제안을 거부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교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우리가 담보 대출을 받으면 언젠가는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빨리 갚으려면, 결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교·구제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빚에 허덕여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은혜로울까요.”

나눔과 섬김교회에는 빚뿐만 아니라 ‘십일조’도 없다. 교인들이 내는 현금의 종류는 목적 현금과 감사 현금 딱 두 가지다. 십일조의 의미가 구약 시대와는 달라졌고, 또 십일조든 감사 현금이든 절기 현금이든 본질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명칭을 감사 현금으로 통일한 것이다. 현금은 무기명으로 하고, 주보에는 누가 현금을 냈는지 기록하지 않는다. 조 목사는 현금 체계에 대해 대부분의 교인들이 동의하고 따른다고 말했다.

“대부분 신선하게 받아들이지만, 더러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와 관련해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 이것저것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금 공제액만큼 더 현금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스스로 정한 현금액에서 세금 공제액만큼 미리 공제하고 현금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 기명으로 현금하는 교인도 있었다. 지금은 모든 교인이 무기명으로 현금을 내고 있다. 십일조가 없다 보니 다른 교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때도 있다. 한 권사는 타 교회에 출석하는 지인으로부터 “십일조가 없는 교회는 이단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받아 봤다고 했다.

교인들은 현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들어 본 일이 없다고 말한다. 간혹 조 목사가 현금과 관련해 언급할 때가 있는데, 현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교인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 더 작고 강한 공동체를 향하여

조인선 목사와 교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 분립이다. 정관에는 출석 교인이 150명 되면 분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1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교인들은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며, 기존의 교회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다. 목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교회가 펼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회 문제는 결국 목사들의 문제이고, 그중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가정을 부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수입을 위해 더 큰 교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할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사가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자비량 목회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선 목사의 말이다.

취재/글 \_ 이용필 기자



A

# 종교인 과세 여부의 판단 근거 :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인가?

## A.1

###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실관계

## A.2

### 실정법(세법) 적용 차원

몇 년 동안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또다시 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바람직한 파문인가? 아니면 막아야 할 파문인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자.

- 종교인도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액이 많든 적든, 수령하는 금전의 성격이 사례비, 생활비, 급여이든, '수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이다.
- 종교인도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위 세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현행 실정법(세법) 차원에서의 판단과 실정법을 초월한 가치 판단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01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형태는 제공한 물건 또는 서비스의 대가성으로 받거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수령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수령한 금전의 성격이 대가성으로 받는 것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수령한 금전 중 이재 구호 금품, 불우이웃돕기 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4항). 즉, 종교인이 불우이웃돕기 대상으로서 받는 성격의 금전이 아니라면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 가지 세목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한다.

## 02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라는 용어와 ‘근로자’의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 1항)가 과세 대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기업의 대표 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봉급 역시 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논의하면서 성직자가 ‘근로자냐 아니냐’는 논의는 성직자가 삼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논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 03 성직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가 아닌가

고민의 관점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근로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과 받는 급여

가 ‘대가성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의미로서 근로는 하나님 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따라서 성직자든 일반인이든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로서의 거룩한 사역이며, 성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에 해당한다.

성직자가 대가성으로 급여·사례비를 받는다는 표현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은 성직자가 삼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꾼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나?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에 삼꾼인가. 아니면 대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삼꾼인가. 대가는 누군가의 수고에 대하여 고마움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건네는 감사의 표시이므로 대가의 존재 여부가 ‘삼꾼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삼꾼은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삼꾼이다.

물론,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내면의 의사 결정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물론 가끔 드러날 때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성직자가 삼꾼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직자가 수령하는 금전이 대가

성이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면 중여세를 부담해야하므로 수령하는 금전이 수행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담할 세목의 구별에 대한 고민이지, 성직자 과세 여부 자체를 판단할 기준으로서의 실익은 없다.

#### 04 이중과세가 아닌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할 때 이를 이중과세라고 한다. 즉 소득 귀속의 주체와 소득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가 이중과세의 필요조건이다.

교인들의 현금은 성직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되고,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성직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의 귀속주체가 각각 교회와 성직자로 서로 다르고, 소득의 종류도 기부(수증)받은 현금으로서의 출연금과 수령하는 급여로 소득의 종류도 서로 다르다.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려면 교인들이 하나님(교회)이 아니라 성직자 개인에게 현금하는 경우어야 하며, 교회 재정의 사용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라 성직자 개인이 결정하는 ‘성직자=교회’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해를 위한 사례로, 부모가 십일조나 다른 현금을 공제

한 후의 소득으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다면, 자녀들은 이미 십일조 등 현금한 이후의 소득으로 받은 용돈이므로 자녀 입장에서 현금할 필요가 없는가?

#### 05 생활비도 못 받는 성직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

세금은 발생한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므로 많이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거나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급여 188만원까지는 매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성직자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논점들을 정리할 때 성직자가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소득세 과세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가 대가성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중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성직자가 납세할 근거가 없다’는 표현은 세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 가치판단 차원

### 01 교회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줄어드는 사례비는?

성직자가 납세를 하면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은 교회가 성직자들이 개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예를 들어, 임차료, 학비, 건강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도 교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성직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만큼 교회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또는 중여세)는 금전을 수령하는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므로, 교회가 부담하거나 교회로 전가할 성격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위성 여부가 우선인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여부가 우선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와 성직자의 재정 부담과 순 수령액의 감소 때문이라는 경제적 동기를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교인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앞서서 진리를 지키기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종속되어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결국 교인들에게 생활이 어렵거나 현금할 돈이 부족하면 세금을 내지 말고, 심지어 부정한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경제적 필요를 유지하고 채우라는 어처구니없는 맘몬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가르치고 조장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 이 사용하실 돈이 부족해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돈 조차 아쉬워하실까?

### 02 납세로 인해 정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닌가

누가 간섭을 받는 것인가? 교회가? 아니면 성직자가? 납세는 성직자 개인 차원의 부담이므로 교회와 무관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어떤 간섭을 하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간섭을 하겠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성실 납세자로 포상 받는 것도 간섭인가?

종교 기관인 교회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조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비영리법인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를 받고 있지,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교회와 성직자는 봉사 활동을 수행하므로 소득세 납부는 이중부담이다?

교회가 수행하는 선한 사업(봉사 활동) 때문에 세법은 교회가 수령하는 현금을 봉사 활동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

아 중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현금을 한 교인들에게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가 수행하는 봉사 활동 때문에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 봉사 활동이 의무인가, 봉사인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사전(辭典)적 의미의 봉사 개념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독인들의 삶은 봉사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제자로서의 의무적’ 삶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섬기는 의무여야 한다. ‘봉사’라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할 바를 한다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

### 적극적 사랑과 소극적 사랑

봉사는 봉사의 대상인 수혜자들로부터 감사의 대상이거나, 최소한 비난의 대상은 아니어야한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봉사를 하는 것이 ‘적극적 사랑’의 표현이라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극적 사랑’의 표현이므로, 납세는 소극적 사랑의 표현에 해당한다. 수혜자들인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의무인 소극적인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

서 더 큰 적극적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가식일 뿐이다. 봉사한다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비용 분담조차 하지 않는 봉사자가 표현하는 사랑에 대해 세상은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 백번 양보해서 납세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세금을 납부함으로 세상이 교회와 소통할 수 있다면 세상을 품는 사랑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다

### 봉사의 주체는 교회인가, 성직자 개인인가

사회에 봉사를 수행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수행하는 것이다. 성직자가 수령한 개인 차원에서의 금전을 봉사 활동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드려진 현금을 세상과 나누고, 교인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므로 이중부담이라는 표현은 성직자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오류가 생각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다.

###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소명과 주신 달란트에 따라 각각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봉사를 생각하면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을 통한 역할이

세상을 섬기는 성직이므로 성직자의 봉사만 특별히 구별할 것은 아니다.

#### 04 세금을 ‘납부함’으로 또는 ‘납부하지 않음’으로 지켜지는 가치?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논쟁을 지속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 과세를 거부함으로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가?
- 과세를 찬성함으로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가?
- 종교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근로가 아닌 봉사임을 강조함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 종교인을 일반 직업과 구별해서 무슨 가치를 지키는가?

종교인의 납세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❶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공동 비용을 분담함으로 국민이라는 차원의 동질감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 ❷ 성속 구분 없이 모든 직업이 소명과 달란트에 따른 거룩한 영역이다.
- ❸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넓혀간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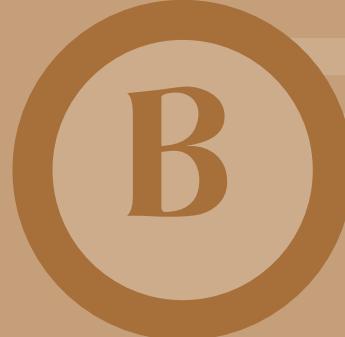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치는 그것이 ‘근로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느냐이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데 그것이 근로이면 어떻고 봉사이면 어떤가! 아무 잘못 없이 하늘 보좌에서십자가의 죽기까지 부당함을 감당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낚추셨다. 오로지 죄인된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건만, 그 명령은 현대 한국교회에서 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가? 말씀이 살아있음은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자정될 때 이다.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돌팔매질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면 세상에서 무엇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면의 음성들에 솔직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마음을 다해 기다린다!<sup>(1)</sup>

(1) 이 글은 〈목회와신학〉, 2012년 5월호, pp158~162에 게재한 글이며, 지면 제약으로 편집한 부분을 보완한 글입니다.



B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활동 연혁 및 단체 소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활동 연혁

### 2005년

- 4월 : 교회 재정의 건강성을 위한 세미나(교회재정건강성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교회 재정에 관한 성경·신학적 기준을 논의한 세미나)  
 8월 :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시작

### 2006년

- 4월 :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 개최  
 5월 : 교회 재정 내부 간담회  
 8월 : 한국교회 재정 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46개 교회 결산서, 23명의 재정 담당자 개인 설문 결과를 발표)  
 12월 : 바른 재정 세미나

### 2007년

- 11월 :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조례) 발표 기자회견  
 11월 : 투명한 재정이 교회를 살린다 세미나

### 2008년

- 4월 : 교회 재정 운영 규정에 관한 공청회  
 6월 : 목회자 납세(신고·환급) 설명회

10월 : 목회자 납세 설명회(대구)

10월 : 현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의식 조사

11월 : 교회 재정 세미나 “감사의 정석”

### 2009년

- 6월 :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단체명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으로 변경  
 11월 : 교회 재정 세미나 “예산의 정석”

### 2010년

- 11월 : 교회 재정 세미나 “회의의 정석”

### 2011년

- 11월 : 교회 재정 세미나 “재정 보고의 정석”

### 2012년

- 5월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발간 기념 기자회견  
 6월 : “기독교 연합 기관 재정 운용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2012년

- 1월 :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칼럼 <뉴스엔조이>에 기고 중  
 5월 : 목회자 소득세 신고 대행 지원 활동  
 8월 : “종교인 기타 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  
 11월 : 교회 재정 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단체 소개

2014년

- 5월 : 목회자 소득세 신고 대행 지원 활동
- 6월 : 교회 재정 공개 촉담회 “재정 공개 실현과 과제”
- 11월 : 교회 재정 세미나 “공개해도 괜찮아”
- 12월 : 기자 간담회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
- 12월 : <한눈에 보이는 건강한 교회 재정> 단행본 발간, (<뉴스앤조이> 공동)

### 01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02 운동 전략 및 실행 계획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 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 재정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 모범 사례 발굴, 대안 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 사용 원칙 제시, 재정 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 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 보급, 회계 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 담당자 교육
3. 교회 현장 운동 : 목회자 납세 운동, 재정 결산서 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 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 모델 육성

### 03 함께하는 단체들

#### 교회개혁실천연대

-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 전화\_02-741-2793

- 팩스\_02-741-2794
-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 우편주소\_protest@protest2002.org

### 기독경영연구원

-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 전화\_02-718-3256
- 팩스\_02-718-3528
- 홈페이지\_www.kocam.org
- 우편주소\_kocam@kocam.org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전화\_02-794-6200
- 팩스\_02-790-8585
- 홈페이지\_www.cemk.org
- 우편주소 cemk@hanmail.net

### 바른교회아카데미

-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 청어람
- 전화\_02-777-1333
- 팩스\_02-319-1103
-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 우편주소\_gcacademy@hanmail.net

### 한빛누리재단

- 주소\_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83-2 2층
- 전화\_02-924-0240
- 팩스\_02-924-0243
- 홈페이지\_www.brightfound.org
- 우편주소\_thebrightfd@gmail.com